

## 조선시대 신덕왕후(神德王后) 부모론(祔廟論)의 의의

이 현 진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 1. 서론

조선은 성리학을 국학으로 채택한 만큼 의리와 명분을 강조하는 국가였다. 하지만 초기에는 항상 그렇듯이 정치적 파동기를 겪으면서 이와 배치되는 여러 모습들이 나타났다. 왕실과 관련한 측면에서 본다면 다음과 같은 여러 사건들이 있었다. 태조의 계비(繼妃) 신덕왕후 강씨(神德王后 康氏)가 정비(正妃)였음에도 태조와 함께 종묘에 부모되지 못하고 능인 정릉(貞陵)이 폐릉된 사실, 조선의 두 번째 왕이었지만 묘호(廟號)조차 없었던 정종(定宗), 세조의 왕위 찬탈로 인해 문종의 비 현덕왕후 권씨(顯德王后 權氏)가 종묘(宗廟)에서 출향(黜享)되고 능인 소릉(昭陵)이 폐릉된 사건, 세조로 인해 단종이 노산군(魯山君)으로 강등된 채 사사(賜死)된 점, 왕위에 즉위한 적도 없는 왕의 생부(生父)가 덕종(德宗)으로 추숭(追崇)되어 종묘에 부모된 경우, 덕종 추숭으로 말미암아 공정대왕(恭靖大王[定宗])과 문종의 종묘 익실로의 이부(移祔), 중종

주 제 어: 祔廟, 神德王后, 宋時烈, 士林, 西人

Enshrining, Queen Shindeok Wanghu, Song Shi Yeol, Sarim, Seoin

의 원비(元妃) 단경왕후 신씨(端敬王后 愼氏)가 궁에서 내쳐진 사실 등이 이에 해당한다. 문종의 경우는 이들처럼 직접적이지는 않았지만 세조가 즉위한 이후 종묘 익실로의 이부외에도 여러 부면에서 종묘에서 부당한 대접을 받았었다.<sup>1)</sup>

이상에서 열거한 이들은 정식으로 그 자리에 올랐지만 정치권력의 역학관계로 인해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한 국왕이나 후비(后妃)들이다. 이들 사건들은 대개 종묘와 관련하여 정통성에 문제를 유발시킨 사례들이다. 곧 제대로 대우를 받아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경우와 해서는 안 될 일을 추진하여 원칙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경우이다. 후자의 경우 한 번 결정된 뒤에는 추후에 일어나는 추승 때 외에는 별달리 거론할 일이 없었다. 전자의 경우는 이와 달리 조선전기와 중기에도 거론되고, 그때 해결된 경우는 괜찮지만 대부분 후기로 미루어졌다. 해결된 사건은 항상 전례(前例)로서 제시되거나 그 뒤에 일어날 사건에 영향을 미쳤다. 이들 여러 사건들 가운데 조선전기에 명확히 해결을 본 경우는 현덕왕후 권씨의 종묘 부모와 문종이 종묘에서 제위치를 찾은 경우 뿐이다. 특히 앞의 사건은 향후 다른 사건들에게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중요하였다.<sup>2)</sup> 이들 사건들의 해결은 주로 사림(士林)이 정계에 등장하면서 이루어낸 결실이었다.

선조대에 이르러 사림정치가 본격화하면서 전대 왕들이 행한 잘못을 모두 거론하는 등 본격적인 개혁을 추구하였다. 하지만 실현을 보지 못한 채 임진·병자의 큰 난이 발생하면서 조선 사회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였다. 우선

1) 종묘 익실로의 移祔 이의 단적인 예를 들자면, 중종 13년(1518) 대간 曹彬卿이 “종묘 제4실 문종의 신위를 ‘祖’라 칭하지도 않고, ‘孫’이라 칭하지도 않으니, 선대에서 빠뜨린 예를 후세에서 追後하여 바로잡는다 하여 孝에는 해롭지 않습니다”(『增補文獻備考』 卷55, 禮考2 宗廟1 廟制 「朝鮮」)를 통해서 입증된다. 문종은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었다. 문종에 대한 이러한 부당한 예우와 이후 제 위치를 잡아간 과정 등 전반적인 모습은 李賢珍, 2002 「조선 전기 昭陵復位論의 추이와 그 의미」 『朝鮮時代史學報』 23, 70-76쪽 참조.

2) 현덕왕후 권씨의 출향과 복위 및 그 영향에 대해서는 李賢珍, 2002 위의 논문 참조.

이들 전쟁으로 빚어진 제반사를 극복하기 위한 일이 급선무였다. 새로운 방법의 모색이 절실한 가운데, 특히 병자호란으로 인한 자존심 회복에 주력하였다. 이를 위해 의리와 명분을 무엇보다 강조하였다. 먼저 양난의 충신 열사들을 추모하거나 그들의 자손들을 녹용하였다. 또한 서원에 이들을 제향함으로써 추모 사업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일련의 일들은 조선전기까지 소급하여 성리학적 기준에 미흡했던 일들을 총정리하기 시작하였다.<sup>3)</sup> 동시에 왕실과 관련하여 정통과 의리에 하자가 있었던 문제들도 그 대상에 포함되었다. 신덕왕후 강씨를 종묘에 부모하자는 논의를 필두로 점차 다른 사안들로 확대되었다. 신덕왕후를 추부하자는 논의의 전개는 '의리'의 측면으로 접근하면서, 동시에 종묘와 관련시켜 그 중요성을 감안해 반드시 제 위치를 점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신덕왕후와 관련한 단독 연구로 한 편의 글이 있어 참조된다.<sup>4)</sup> 여말 후비들의 부제(耐祭) 문제라든가 조선 건국 전후로 신덕왕후의 활동에 대해 많은 도움이 되었다. 다만 여말선초에 중점을 두다보니 조선 건국 초기 이외의 시기별 논의의 설명이 소략하다. 특히 선조, 현종대 부모 논의에 대해서는 논의가 발생하는 배경이라든가 본격적인 논의 등이 결여된 아쉬움이 있다.

본고는 조선후기에 접어들어 종묘에서의 정통성을 주장하는 첫 사건이었던 신덕왕후를 종묘에 부모하는 논의를 살피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신덕왕후가 부모되지 못하고 폐릉까지 간 사건의 전말과 폐릉론이 등장하게 된 경위를 밝히려 한다. 또 선조대 처음으로 이 문제를 제기하여 몇 년간 논의를 전개하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현종대로 넘어간 과정을 서술하려 한다. 현종대

3) 정옥자, 1998 『조선후기 조선중화사상연구』 일지사, 19-21쪽. 앞서 언급했던 여러 왕실 의례들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 송시열이 을사사화 피화인들에게 증직을 청하는 일이나[『顯宗實錄』 卷16, 顯宗 10年 1月 己亥(5); 『顯宗改修實錄』 卷20, 顯宗 10年 1月 己亥(5)] 사육신 복위를 추진하는 일 등이 해당한다[『正祖實錄』 卷32, 正祖 15年 2月 丙寅(21)]. 이와 비슷한 일련의 일들은 조선후기에 지속적으로 이어진다.

4) 尹斗守, 1989 『神德王后에 관한 研究』 『石堂論叢』 15.

에 이르러 본격적으로 정치쟁점화하면서 갈등을 겪기도 하지만 결국 부모됨을 추이(推移)에 따라 살피려 한다. 마지막으로 신덕왕후 부모론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소위 “종묘정통론”<sup>5)</sup>과 관련하여 살펴보고, 또 후대에 끼친 영향까지 언급하고자 한다.

현종대 정국에 대한 종전까지의 연구는 복제(服制) 논쟁을 둘러싸고 서인과 남인이란 대결 구도로 설정하였다. 이 구도에 이의를 제기한 연구가 있어 흥미로운 가운데,<sup>6)</sup> 본고에서 다루려는 신덕왕후 부모 논의는 논의 과정을 통

- 
- 5) 기존 연구에서 ‘정통론’이라 함은 어떤 왕조의 정통적 지위 확보라든가 왕실 혹은 사대부가 계승자의 종법적 정통성 여부 및 왕후나 총부의 적적 지위의 적합성 등등을 일컬었다. 본고에서 사용한 ‘종묘정통론’이라 함은 종묘내에서의 정통성과 관련한 논의를 말한다. 종묘 내에서 정통적 지위를 확보해야 할 임금이나 왕후가 그렇지 못한 경우, 이를 회복해가는 과정으로 본고의 논의를 전개하므로 ‘종묘정통론’이란 용어를 사용했음을 언급해 둔다. 종묘가 왕과 왕후의 신위를 모시는 곳이지만 종묘에서의 정통성 확보는 곧 그 왕의 정통성과 아울러 평가까지 엮을 수 있으므로 본고에서는 무엇보다 이 용어의 의미에 강조점을 두고자 한다.
- 6) 현종대 정국을 종전에 서인과 남인이란 봉당간의 대결구도에 이의를 제기하며, 현종초 정계에 4갈래 계통의 정치세력이 존재한다는 연구가 있어 참조된다[鄭萬祚, 1999 『朝鮮 顯宗朝의 公義·私義 論爭과 王權』 『東洋 三國의 王權과 官僚制』(조선시대사학회) 국학자료원 137-139쪽]. 山黨, 漢黨, 대신급을 위시한 일반관료들, 남인계 관료들 등 4계통으로 현종초 정치세력의 존재를 설정하였다. 실록의 기사 가운데 ‘송시열·송준길에 붙잡는 시류의 무리들을 산당이라 일컬었다’는 기록이 이를 뒷받침한다[『顯宗實錄』卷16, 顯宗 10年 1月 壬寅(8)]. 또한 연장선상에 있는 연구로 인조말부터 효종, 현종 연간의 정치세력을 西人내의 산당과 한당의 대립 구도로 설정한 연구[鄭萬祚, 1992 『17世紀 中葉 山林勢力(山黨)의 國政運營論』 『擇窩許善道先生停年紀念韓國史學論叢』; 1999 『17세기 중반 漢黨의 정치활동과 國政運營論』 『韓國文化』 23], 현종대의 주된 정치세력을 서인과 남인으로 설정하면서도 서인 내부에서는 峻論으로 표현된 송시열계와 緩論이라 표현된 비송시열계가 갈등을 보인다는 연구(禹仁秀, 1999 『朝鮮後期 山林勢力研究』 一潮閣, 164-171쪽) 역시 정치세력을 다양한 시각으로 볼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된다. 서인 내부에서 송시열계와 비송시열계로 나뉜다는 연

해 알 수 있겠지만 봉당정치에 입각해 학파와 정파가 긴밀한 연관성을 보인다는 점이 주목된다. 신덕왕후 부모 논의를 통해서 정치세력의 변화까지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 생각한다.

## 2. 태종대 신덕왕후 폼하와 선조대 부모론의 제기

### 2.1. 태종대 신덕왕후 폼하 조치의 전말과 폐릉론의 등장

태조 이성계는 조선을 건국한 뒤 곧바로 강씨(康氏)를 현비(顯妃)로 삼았다.<sup>7)</sup> 현비를 세우기 이전 그에게는 이미 절비 한씨(節妃 韓氏)가 있었다. 절비

---

구는 용어상의 차이일 뿐 바로 한당과 산당의 다른 표현으로 보아야 하겠다. 왕대별로 정치세력을 재구성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정치세력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힌다는 점에 있어서 매우 공감한다. 다만 연구자 스스로 학문적 연결에 의한 師承관계가 거의 보이지 않아 정치집단으로 설정하는 데 다소 異見이 있을 수 있다고 인정했듯이, 최근 이를 지적한 연구가 있어 참조된다[우경섭, 2004 「潛谷 金堉(1580~1658)의 學風과 '時勢' 認識」 『韓國文化』 33]. 본고에서 다룬 신덕왕후 부모 논의는 오히려 기존의 연구 경향을 보인다. 물론 어떤 한 시대를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방법은 많은 무리를 수반할 가능성이 크다. 크게 서인, 남인의 이분법적 구도, 왕대별로 좀 더 좁혀 서인내의 한당, 산당으로 구별한 구도 등 넓은 범주, 혹은 좀 더 좁은 범주로 묶어서 파악하는 연구 방법은 매우 중요하다. 한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은 사건별로 다른 입장을 취할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시기나 범주를 좁힐수록 혹은 개인의 私怨 관계에 따라 정치적 이해 관계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정치세력에 대한 이해는 정치적, 학문적 성향과 아울러 자신의 위치나 지위, 발생하는 사건의 성격 등 복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또한 인물을 파악할 때 긴 시간대를 두고 일률적으로 같은 입장을 취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기본적으로 견지하는 정치적 입장과 사건에 따른 입장의 변화 등 정치세력에 대한 이해는 다각도로 면밀한 재검토가 요청된다고 본다.

7) 『太祖實錄』 卷1, 太祖 1年 8月 丙辰(7).

는 포천(抱川) 재벽동(滓壁洞)의 전장(田莊)에, 현비는 포천 철현(鐵峴)의 전장에 살았다.<sup>8)</sup> 후대의 기록이지만 고려시대에는 서울과 지방에 아내를 두는 법규,<sup>9)</sup> 혹은 부인을 둘 두는 제도가 있었다고 한다.<sup>10)</sup> 현비는 태조가 잠저에 있을 때 개경의 아내[경처(京妻)]였다고 기록하였다.<sup>11)</sup> 절비는 조선 건국 이전에 흥서하여, 건국한 뒤 신의왕후(神懿王后:1337~1391)로 추존하였다.<sup>12)</sup> 절비의 추존은 정종이 즉위한 뒤에 이루어졌으므로 건국 당시의 정비는 바로 현비였다.<sup>13)</sup> 현비가 태조 5년에 흥서하자 존호를 신덕왕후(神德王后), 능호를 정릉(貞陵)이라 하였다.<sup>14)</sup> 태조는 다시 성비 원씨(誠妃 元氏)<sup>15)</sup>와 정경궁주 유씨(貞慶宮主 柳氏)<sup>16)</sup>를 맞아들였다.<sup>17)</sup> 태조의 정식 비는 節妃 韓氏, 顯妃 康氏,

8) 『太祖實錄』卷1, 總序.

9) 『春官志』卷1, 復位「貞陵復位」; 『燃藜室記述』卷1, 太祖朝故事本末「貞陵廢復」(柳川筭記); 『顯宗改修實錄』卷20, 顯宗 10年 1月 戊戌(4).

10) 『顯宗改修實錄』卷21, 顯宗 10年 5月 壬子(20).

11) 『顯宗改修實錄』卷20, 顯宗 10年 1月 戊戌(4).

12) 『列聖冊文』(奎 9822), 神懿王后「追上尊諡玉冊文」; 『列聖誌狀通紀』(一)卷2, 承仁順聖神懿王后韓氏「追上諡號竹冊文」(太祖七年戊寅九月 定宗受禪 十一月十一日癸未 以右政丞金士衡爲奉冊使 政堂文學河崙爲副使 獻冊于文昭殿什○按太祖卽位初 追諡節妃 而冊文不傳),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영인본, 2003, 201-202쪽(이하 같음); 『太祖實錄』卷15, 太祖 7年 11月 癸未(11). 태조가 9월에 전위하였으므로 『열성책문』에는 恭靖大王 戊寅年(즉위년) 11月 癸未(11)로 기록하였고, 『열성지장통기』는 이와 같은 사정을 모두 설명하고 있다.

13) 추존이 태조 7년 11월인데 이미 9월에 定宗에게 양위한 뒤였다. 아들 정종이 즉위하면서 모후를 추존한 것이다.

14) 『太祖實錄』卷10, 太祖 5年 9月 癸未(28); 『太祖實錄』卷11, 太祖 6年 1月 丙辰(3).

15) 성비원씨는 元庠의 딸이다. 본관은 原州이다. 원상은 그의 딸이 성비로 봉작되자 공조 참의에 임명되었다. 원상은 檢校僉議評理를 지낸 善之의 손자이며, 政堂文學을 지낸 송수(松壽)의 아들이다. 조선이 개국된 뒤 태조가 그의 덕망을 아껴 여러 차례 불렀으나 응하지 않다가, 태종대 이르러서야 벼슬을 제수받아 정계로 진출하였다. 시호는 僖靖이다.

誠妃 元氏가 되는 셈이다. 태조의 능인 건원릉(健元陵)의 지석문(誌石文)에는 수비 한씨(首妃 韓氏)만을 기록하기도 했지만<sup>18)</sup> 건원릉의 비문이나 환조(桓祖)의 정릉(定陵) 비문, 후대의 논의에서 절비와 현비만 정식비로서 인정하고 있는 사실을 볼 때,<sup>19)</sup> 성비는 정비로서 인정을 받지 못한 것 같다. 조선 초기 정식비의 칭호를 절비·현비 등으로 일컫은 것은 아직 제도가 정비되지 않아 고려시대의 제도를 따른데서 비롯된 듯하다.<sup>20)</sup>

현비(顯妃), 곧 신덕왕후(神德王后: ?~1396)는 개국(開國)의 성후(聖后)가 되었기 때문에 건저(建儲) 문제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았다. 신의왕후에게는 여섯명의 아들이 있었지만 신덕왕후에게도 두 명의 아들이 있어, 신덕왕후의 입장에서는 왕위 계승의 야망을 가질만하였다. 뿐만 아니라 태조는 신덕왕후를 '신덕왕태후(神德王太后)'라 추시존호(追諡尊號)를 올렸고,<sup>21)</sup> 능을

16) 정경궁주 유씨는 柳濬의 딸이다.

17) 『太宗實錄』卷11, 太宗 6年 5月 辛卯(2).

18) 『太宗實錄』卷16, 太宗 8年 11月 乙卯(11).

19) 건원릉 비문에는 首妃韓氏, 次妃康氏라 하였고[『太宗實錄』卷17, 太宗 9年 閏4月 乙卯(13)], 定陵 비문에는 殿下配韓氏, 繼室康氏라 하였으며[『復齋集』下, 有明朝鮮國桓王定陵碑銘: 『太祖實錄』卷4, 太祖 2年 9月 庚申(18)], 현종대 신덕왕후를 종묘에 부묘하자고 할 때 나온 논의는 모두 神懿王后 韓氏와 神德王后 康氏만을 正妃로 인정하고 있다.

20) 고려시대는 왕의 어머니를 王太后, 적처를 王后, 첩을 夫人이라 불렀다. 부인은 貴妃·淑妃·德妃·賢妃 등으로 불렀고, 靖宗 이후에는 宮主·院主·翁主라고 칭하는 등 일정하지 않았다[『高麗史』卷88, 列傳1 后妃1]. 이러한 제도는 원간섭기에 들어가면 원나라 공주 이외의 正妃를 ○妃 ○氏라고 한 듯하다. 곧 壽妃 權氏, 禧妃 尹氏, 和妃 洪氏 등등의 형태이다. 첩은 銀川翁主 林氏 등의 형태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高麗史』卷89, 列傳2 后妃2]. 원간섭기 때부터의 제도가 그대로 조선초기까지 이어진 것 같다.

21) 태조가 슬퍼하여 유사에게 명하여 追諡尊號를 올려 '神德王太后'라 하였다는 기록이 있다[『陽村集』卷12, 記類「貞陵願堂曹溪宗本社興天寺造成記」]. 고려시대에는 '王母'를 '왕태후'라 하였는데[주 20) 참조], 조선초기 왕태후를 쓴 경우는 태조의 元妃인 節妃를 '神懿王太后', 태종의 元妃를 '元敬王太后'라 한 두

공신(功臣)으로 하여금 3년을 지키게 할 만큼 총애가 각별하였다.<sup>22)</sup> 신덕왕후를 중히 여겨 그의 소생을 왕세자로 삼고자 뜻을 두었고, 결국 막내 아들 방석(芳碩)을 왕세자로 삼기에 이르렀다.<sup>23)</sup> 처음 논의할 즈음에 태조의 견해에 쟁집하는 이들이 있자 신덕왕후가 병풍 뒤에서 통곡하였다는 후대의 기록은 당시의 상황을 짐작하게 한다.<sup>24)</sup>

태조의 이와 같은 의도에 정도전(鄭道傳:1337~1398)이 가세하면서 제1차 왕자의 난을 불러일으켰다. 이 난으로 신덕왕후의 두 아들과 사위 이제(李濟: ?~1398)가 모두 죽임을 당하였고, 딸 경순궁주(敬順宮主)는 여승이 되었다.<sup>25)</sup> 세자 책봉문제로 빚어진 이 난으로 태종은 부왕(父王)의 계비 신덕왕후에게 강한 반감을 품게 되었다. 태조가 신덕왕후의 소생을 세자로 세우려 한 이유가 전적으로 신덕왕후에게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 난 이후 신의왕후 소생의 두 번째 아들인 정종이 즉위하였다. 다시 2년 뒤 제2차 왕자의 난으로 태종이 즉위하면서 자신의 권력을 강화시켜 나갔다.

조선 개국 초기에는 두 차례의 왕자의 난 뿐만 아니라, 반란과 역모의 움직임이 적지 않았다. 특히 개국 공신들 가운데 사병(私兵)을 지닌 강한 세력들이

---

사례가 있다. 龕室의 位版에 ‘왕태후’ 라고 기록한 사실이 숙종대까지 남아 있었다가 송시열의 건의로 ‘太’ 字를 제거하였다[『宗廟儀軌』 上, 主制, 서울대 규장각 영인본, 1997, 233-247쪽(『宗廟儀軌』(奎 14220)을 영인한 것임. 이하 같음]. 태조가 자신의 부인을 ‘왕태후’ 로 시호를 추존하도록 했다는 사실은 고려 시대의 제도वाद 어긋나고, 실록에서 ‘신덕왕후’ 라 한 기록과도 다르다. 자식의 입장에서 그 모후에게 ‘왕태후’ 라 올릴 수 있었는데, 신덕왕후는 정종, 태종, 세종을 거치면서 전혀 그런 대우를 받지 못했었다. ‘추시존호’ 라는 말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태조가 단독으로 올리도록 명했을 가능성이 유력하다.

22) 『太祖實錄』 卷10, 太祖 5年 8月 辛丑(16). 신덕왕후가 죽은 지 3일 뒤이다.

23) 『太祖實錄』 卷1, 太祖 14年 8月 己巳(20).

24) 『燃藜室記述』 卷1, 太祖朝故事本末 「太宗定社」(戊寅秋, 東閣雜記); 『顯宗實錄』 卷16, 顯宗 10年 1月 戊戌(4); 『顯宗改修實錄』 卷20, 顯宗 10年 1月 戊戌(4).

25) 『定宗實錄』 卷2, 定宗 1年 9月 丁丑(10). 태종실록에는 慶順宮主로 기록하였다 [『太宗實錄』 卷14, 太宗 7年 8月 戊子(7)].



많아 정국이 불안한 상태였다. 그런 가운데 신덕왕후를 폄손시킬 만한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하였다. 바로 신덕왕후의 친족인 안변부사(安邊府使) 조사의(趙思義: ?~1402)가 군사를 일으켜 반란을 획책하였던 것이다.<sup>26)</sup> 신덕왕후를 위해 원수를 갚고자 한다는 기치를 내세워 군대를 일으켰다가 진압되어 관련자들이 모두 복주되거나 처벌을 받았다. 신덕왕후는 이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에 사망하여 직접적인 연관은 없었지만 이와 관련하여 명분상 가해진 피해는 컸다.<sup>27)</sup>

사실 위에서 본 것처럼 신덕왕후에게 해를 가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조사의의 반란이었다. 그럼에도 선조·광해군을 거쳐 현종대에 이르도록 신덕왕후가 부모되지 못한 원인으로 제1차 왕자의 난만을 꼽고 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sup>28)</sup> 이러한 사실은 제1차 왕자의 난 이후 신덕왕후에 대한 강한 불만을 조사의의 난을 계기로 직접적으로 표출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 근본적인 원인을 후자보다는 전자에 두었다는 증거이다.

26) 『太宗實錄』卷4, 太宗 2年 11月 甲申(5).

27) 가해의 범위는 조사의의 난에 가담한 자들 이외에는 신덕왕후에게만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신덕왕후에게 많은 해를 가하였다면 그의 친정에도 해가 미쳤을텐데 오라비 康繼權에 대한 처우를 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다. 강계권이 졸하였을 때 3일동안 輟朝하고 致祭하였으며, 靈平이란 시호를 내려주고 功臣 下等의 예로써 장사지내게 했기 때문이다[『太宗實錄』卷25, 太宗 13年 6月 己巳(22)]. 아마 조사의의 난에 친정이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 추측해 본다. 후일 신덕왕후를 종묘에 부모한 뒤 부모를 추증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는 이전에 지위를 박탈당했다가 회복한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부모 뒤 관례적으로 베푸는 은전으로 보아야 하겠다.

28) 예를 들면, 현종대 신덕왕후 부모를 제일 먼저 주창한 宋時烈이, “태조께서 개국한 뒤 鄭道傳 등이 태종을 무함하고 신덕왕후의 자식을 세자로 세웠습니다. 일이 실패하여 신덕왕후의 두 아들은 비명에 죽었고 능침은 성밖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때문에 太廟에 配食할 수 없었습니다.”라고 한 말을 통해 볼 때[『顯宗改修實錄』卷20, 顯宗 10年 1月 戊戌(4)], 부모되지 못한 이유가 제1차 왕자의 난 때문임을 가장 직접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조선 전시기를 걸쳐 정식으로 왕비가 되었지만 종묘에 부묘되지 못하고 폐릉(廢陵)까지 간 경우가 두 번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신덕왕후였다.<sup>29)</sup> 두 번의 난으로 인해 태종은 신덕왕후의 능인 정릉에서부터 시작하여 점차적으로 하나씩 가해하기 시작하였다. 태조가 살아있을 때에는 정릉의 영역(塋域)을 축소하는 정도에 그쳤으나,<sup>30)</sup> 태조가 태종 8년(1408)에 승하하자 그 때부터 본격적으로 해를 가하였다.

우선 정릉을 도성 밖 사을한(沙乙閑) 산기슭으로 천장(遷葬)하였다.<sup>31)</sup> 천장하면서 제사까지 줄여 산릉(山陵) 제례를 조석전(朝夕奠)과 삭망제(朔望祭) 없이 봄 가을 중월(仲月)에 지내는 것만으로 일정한 법식을 삼도록 명하였다.<sup>32)</sup> 이 일이 있는 지 두달 뒤 본격적으로 폐릉을 단행하였다. 태평관(太平館) 북루(北樓)를 새로 지으면서 정릉의 정자각(丁字閣)을 헐어서 누(樓) 3간을 짓고 정릉의 돌을 운반해 쓰게 하였다. 동시에 봉분은 자취를 없애 사람들이 알아볼

29) 『燃藜室記述』 卷4, 文宗朝故事本末 「昭陵廢復」(逐睡篇) “丁丑冬 … 蓋失國之君未見禍及泉壤 而我國貞昭二陵有之”.

30) 『太宗實錄』 卷11, 太宗 6年 4月 丁卯(7). 태상왕(태조)은 산릉을 돌아보고 公卿 이하가 정릉에서 일백 步 밖에 집터를 다투어 점령하고 소나무를 베어서 집을 짓는 것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太宗實錄』 卷11, 太宗 6年 5月 辛卯(2)].

31) 『太宗實錄』 卷17, 太宗 9年 2月 丙申(23). 현종실록과 개수실록 및 撫安大君의 행장에는 ‘沙閑里 기슭’이라 하였고[『顯宗實錄』 卷16, 顯宗 10年 1月 戊戌(4); 『顯宗改修實錄』 卷20, 顯宗 10年 1月 戊戌(4); 『芝湖集』 卷8, 行狀 「先祖撫安大君行狀」(丁巳二月)], 연려실기술에는 ‘楊州 남쪽 沙阿里’로 되어 있다[『燃藜室記述』 卷1, 太祖朝故事本末 「貞陵廢復」(卞季良撰)]. 정릉은 처음에는 도성 안 聚賢坊 북녘 언덕에 장례를 지냈는데[『太祖實錄』 卷11, 太祖 6年 1月 丙辰(3)], 이 때에 이르러 태종이 도성 밖으로 내칠 가부를 의논하게 하니, 의정부에서 ‘옛 제왕의 능묘가 모두 도성 밖에 있는데 지금 정릉이 성안에 있는 것은 부당하고, 또 사신이 묵는 館舍에 가까우니 밖으로 옮기자’고 상언하여 곧바로 실행하였다. 처음 장례를 치른 곳도 연려실기술에는 ‘皇華坊 北原’이라 기록하였다.

32) 『太宗實錄』 卷17, 太宗 9年 2月 丙申(23).

수 없게 하였으며, 석인(石人)은 땅을 파서 묻도록 명하였다.<sup>33)</sup> 또한 광통교(廣通橋)의 흠다리[토교(土橋)]가 비만 오면 무너져 정릉의 옛 받침돌[구기석(舊基石)]로 돌다리를 만들자는 건의에도 동의하였다.<sup>34)</sup>

상황이 이러한 만큼, 태종 10년(1410)에 태조를 부모할 때에는 당연히 문소전(文昭殿)<sup>35)</sup>에 모셔져 있던 신의왕후만 배사(配祀)로서 함께 부모하였다.<sup>36)</sup> 태종 9년에 건원릉에 세운 비석의 비문에는 신덕왕후를 차비(次妃)로서 기록하고 있음에도 태종은 신덕왕후를 태조의 계비로 인정하지 않았다. 부모를 하지 않은 사실뿐만 아니라 폐릉의 단행을 그가 주도한 사실만으로도 짐작할 수 있다. 도성 밖으로 천장하여 내치자는 주장도 그가 먼저 발의하였으며, 정릉을 헐어 다른 용도에 쓰자고 한 제의도 그에게서 나왔기 때문이다. 심지어 계모(繼母)로 신덕왕후가 아닌 성비 원씨를 인정하는 모습까지 보였다.<sup>37)</sup> 태종의 가해가 계속되자 신하들도 신덕왕후를 정적(正嫡)으로 인정하지 않았다.<sup>38)</sup> 제1차 왕자의 난과 조사의의 반란으로 신덕왕후에게 가한 해는 태종 자신의 당대만이 아니라 세종대까지 이어졌다.<sup>39)</sup>

33) 『太宗實錄』卷17, 太宗 9年 4月 乙酉(13).

34) 『太宗實錄』卷20, 太宗 10年 8月 壬寅(8).

35) 처음에는 仁昭殿에 모셨는데 태조가 죽고 얼마 뒤 문소전으로 그 이름을 고쳤다[『太宗實錄』卷16, 太宗 8年 8月 辛丑(26)].

36) 『太宗實錄』卷20, 太宗 10年 7月 辛卯(26).

37) 『太宗實錄』卷32, 太宗 16年 8月 庚辰(21).

38) 『太宗實錄』卷20, 太宗 10年 8月 甲辰(10).

39) 태종대에는 위에서 언급한 외에도 內鄕과 고향을 강등시켰으며[내향 『世宗實錄地理志』卷150, 慶尙道 「晉州牧」; 고향 『世宗實錄地理志』卷152, 黃海道 黃州牧 「谷山郡」], 忌晨에 停朝하는 것을 파하였으며[『太宗實錄』卷20, 太宗 10年 8月 甲辰(10)], 신덕왕후의 忌晨에 임금이 직접 서명한 제문이 아닌 3품관이 대신 서명한 祭文과 疏文을 가지고 齋祭를 행하였다[『太宗實錄』卷24, 太宗 12年 8月 乙亥(23)]. 세종대에는 정릉의 제사와 忌晨齋祭를 나라에서 행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고 하여 죽친들에게 맡기며[『世宗實錄』卷1, 世宗 卽位年 8月 丁酉(20)], 前朝 王氏의 역대 군왕과 妃主들의 影子草圖를 불태울 때 정릉의 半影도

태종, 세종대까지는 건국한 지 얼마되지 않아 제도문물이 정비되지 않았으며, 성리학이 국학으로 채택되었지만 성리학적 의리명분보다는 정치적 파동 속에 현실적인 왕위 계승 문제가 더 크게 작용하였다. 이러한 상황이 왕실에 반영되어 신덕왕후는 종묘에 부묘되지 못하고 오히려 폐릉까지 갔던 것으로 판단된다.<sup>40)</sup>

태조와 신의왕후의 신주만이 종묘에서 배식(配食)을 받았으며, 신덕왕후는 현종 10년(1669)에 이를 때까지 종묘와 무관한 채 방기되었다.

## 2) 선조대 신덕왕후 부모론의 제기

세조가 왕위를 찬탈한 후 단종의 모후(母后)인 문종비 현덕왕후 권씨의 능인 소릉이 폐릉(廢陵)되고 종묘에서 출향(黜享)되었으며, 단종이 노산군으로 강등당한 채 사사되었다. 이로 인해 문종도 종묘에서 부당한 대접을 받았다. 위 여러 일들은 중종대 소릉이 복위되고 종묘에도 부묘됨으로써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되었다. 묘호(廟號)가 없었던 공정대왕(恭靖大王)의 묘호를 추상하자는 주장과 중종비 폐비 신씨(廢妃 愼氏)를 복위하자는 논의 및 노산군의 입후론(立後論)이 이어서 제기되었다. 성종과 연산군대를 걸쳐 사화를 겪으면서도 줄기차게 추진한 사림들의 주장이 관철된 결과였다. 소릉 복위로 인해 사론(士論)이 신장되었다는 선조대 사신(史臣)의 평이 이를 입증해 준다.<sup>41)</sup> 그러나 일련의 일들은 모두 숙종, 영조대에 결실을 맺게 되고, 문종만이 명종

---

아울어 말하러 태우게 하였으며[『世宗實錄』卷32, 世宗 8年 5月 壬子(19)], 세종이 李叔蕃과 卞季良이 정릉을 두고 正室인지 妾인지 논의한 것을 예로 들자, 黃喜가 정릉은 配祭之例에 참여할 수 없다고 답하였고 세종도 이미 다 알고 있다 [『世宗實錄』卷63, 世宗 16年 3月 丁未(30)]라고 맞장구치는 등 곳곳에서 발견된다. 태종과 세종을 걸쳐 신덕왕후에 대한 대우는 펴손될대로 펴손되었다.

40) 조선초기 성리학적 의리론의 정착 과정에 대해서는 李賢珍, 2002 앞의 논문, 55-59쪽 참조.

41) 『宣祖修正實錄』卷15, 宣祖 14年 11月 辛酉(1).

대에 제자리를 찾았다. 신덕왕후는 선조대에 이르러서야 처음 거론되었다.

선조대에 이르러 본격적인 개혁이 추진되었다. 성리학적 기준에 미흡했던 사건들에 대해 사람들은 의리명분의 측면에서 문제 제기를 시작하였다. 신덕왕후를 복위시키자는 계청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나올 수 있었다. 사실 신덕왕후의 일은 오래되어 근거를 찾기 어려운 데다가 그 일에 대해 말하는 사람조차 없었다.

선조 12년(1579)에 이르러 신덕왕후를 부묘하자는 주장의 전초로써 정릉을 봉식(封植)하는 논의가 있었다. 해를 넘기도록 쟁집하여 간신히 윤허를 받았으나 실제로는 미봉책에 그쳤고, 각(閣)을 세우고 관리를 두자는 논의도 있었으나 허락하지 않았다.<sup>42)</sup> 이 때는 신덕왕후를 태조의 정비로 보면서도 원릉(園陵)의 의물(儀物)이 선후(先后)의 예를 갖추지 못했다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 뒤에야 비로소 본격적인 복위 주장이 나온 것으로 보아, 복위 주장의 여건이 2년 전 능의 봉식에서부터 조성되고 있었던 것이다.

발단은 선조 14년(1581)에 신덕왕후의 아비인 강윤성(康允成)의 후손인 강순일(康純一)이라는 자가 국묘봉사자(國墓奉祀者)로서 군역을 면제받기를 원하여 선조에게 하소연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sup>43)</sup> 비로소 신덕왕후에 대한 의논이 일어나 많은 유신(儒臣)들이 조정에 모여 ‘우리나라의 흠전(欠典)은 오직 이 일 한가지 뿐이다.’라고 하여, 예관에게 소릉을 복위시킨 고사와 똑같이 할 것을 청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출발하였다.<sup>44)</sup> 이에 이이(李珥:1536~584)가 앞장서서 ‘신덕(神德)은 태묘(太廟)에 응당 배향해야 할 신위(神位)인데 까닭 없이 제사지내지 않고 있다. 일이 윤기(倫紀)에 관계되므로 마땅히 존숭(尊崇)하는 거조가 있어야 된다.’고 주장하자, 조정(朝廷)이 동조하였다.<sup>45)</sup>

42) 『鶴峯集』 卷3, 啓「請貞陵建閣置官啓」(己卯)·「再啓」; 『栢潭集』 卷7, 議「貞陵獻議」.

43) 『燃藜室記述』 卷1, 太祖朝故事本末「貞陵廢復」(柳川筭記).

44) 『宣祖修正實錄』 卷15, 宣祖 14年 11月 辛酉(1).

45) 『大東野乘』 卷71, 柳川筭記(韓浚謙 撰); 『燃藜室記述』 卷1, 太祖朝故事本末「貞陵廢復」(柳川筭記); 『春官志』 卷1, 復位「貞陵復位」“李珥倡言曰 神德以太廟應

태종대 폐릉 이후 신덕왕후를 복위시키자는 논의는 선조대에 이르러 처음으로 제기된 것이었다. 하지만 이 일 역시 쉽게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선조 14년(1581) 11월에 예문관과 독서당, 옥당이 차자를 올려 신덕왕후의 일을 예관으로 하여금 널리 상고하여 의논 조치하게 할 것을 입계했으나 윤허받지 못하였다.<sup>46)</sup> 이후로 신덕왕후를 정식 왕후로서 대우하기를 청하는 일이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하였다. 시작부터 양사가 함께했으며, 의정부와 성균관 유생으로 확대되어 계속 부모를 청하기에 이르렀다.<sup>47)</sup>

신덕왕후를 정비로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양사, 의정부와 성균관 유생들의 주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효(孝)는 계술(繼述)보다 큰 것이 없고, 예(禮)는 봉선(奉先)보다 중한 것이 없다는 점을 내세웠다.<sup>48)</sup> 이 때의 계술은 단순히 그대로 이어 따른다는 의미가 아닌 변통의 측면을 고려한 뜻이었다. 선조(先朝)의 잘못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고친다는 의미를 내포한 것으로, 태종의 잘못을 그대로 좇지 않고 선조(宣祖) 당대에 이르러 고치는 것이 바로 계술이라는 의미였다. 봉선은 폐추(廢墜)된 예를 닦아 선후(先后)를 받들어 모신다는 의미였다. 개국 초창기에는 모든 일이 소략하였고, 정릉을 한 번 옮긴 뒤에는 전례(典禮)도 제대로 거행하지 못하였는데, 이는 그 당시 일을 맡은 자의 잘못이지 선왕의 본의가 아니라고 하였다. 신덕왕후가 태조의 배필인데 태조가 홀로 태묘에서 향사(享祀)를 받는 것은 잘못이며,<sup>49)</sup> 신덕왕후의 복위는 태

---

配之位 無故不祀 事關倫紀 宜有尊崇之舉 朝廷共起而論之”.

46) 『宣祖修正實錄』 卷15, 宣祖 14年 11月 辛酉(1); 『宣祖實錄』 卷15, 宣祖 14年 11月 癸酉(13).

47) 『燃藜室記述』 卷1, 太祖朝故事本末 「貞陵廢復」; 『顯宗實錄』 卷16, 顯宗 10年 1月 辛酉(27); 『顯宗改修實錄』 卷20, 顯宗 10年 1月 辛酉(27).

48) 『宣祖修正實錄』 卷15, 宣祖 14年 12月 乙巳(15); 『宣祖實錄』 卷15, 宣祖 14年 12月 乙卯(25).

49) 태조는 신의왕후와 함께 종묘에 부모되어 홀로 향사를 받고 있지 않았다. 소릉 복위의 명분이 문종이 태묘에 홀로 향사를 받고 있다는 것이었다(李賢珍, 2002 앞의 논문 참조). 말하는 자의 실수로 생각된다.

조를 위하는 일이며 열성을 위하는 일이라고 강조하였다.

두 번째, 신덕왕후는 성조(聖祖)의 배필로 높은 이름과 아름다운 시호[존명미시(尊名美謚)]가 간책(簡冊)에 있으며,<sup>50)</sup> 세종은 『어천가(御天歌)』에 신의·신덕왕후를 열서(列書)하여 함께 기록하였고, 건원릉의 비문에도 차비(次妃)로서 썼으므로 폄강(貶降)한 일이 없다고 하였다.<sup>51)</sup> 문헌에 있는 기록을 근거로 정식 왕후임을 주장하였고, 끝에는 선조들이 폄강한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계속하며 추모하는 효성을 다하도록 간청하였다.

세 번째, 신덕왕후는 소도[昭悼는 방석(芳碩)]의 변란에 연루되지 않고 그보다 앞서 흥서하였기 때문에 제1차 왕자의 난과는 무관함을 피력하였다.<sup>52)</sup> 의리로도 정문(情文)으로도 논의할 만한 사단이 없는데 그대로 덮어둔 채 2백년이 되었다고 하며, 선후(先后)의 원통함을 씻고 실추된 전례를 닦아 선조를 추모하는 효성을 다하자고 아뢰었다.

네 번째, 신덕왕후는 개국 당시의 성후(聖后)이며, 흥서했을 때 친자가 조위(弔慰)하며 능묘(陵廟)의 칭호를 내렸다는 사실을 들었다. 더욱이 태종은 정릉의 향축(香祝)을 친히 전하여<sup>53)</sup> 종묘(宗廟)·계성전(啓聖殿)·인정전(仁政殿)과 똑같이 존경을 표시하고 차등을 두지 않았던 점을 강조하였다.<sup>54)</sup> 또한 묘

50) 『宣祖實錄』 卷15, 宣祖 14年 12月 丁未(17); 『宣祖實錄』 卷15, 宣祖 14年 12月 壬子(22); 『宣祖實錄』 卷16, 宣祖 15年 1月 庚午(11).

51) 『宣祖實錄』 卷15, 宣祖 14年 12月 戊申(18)·甲寅(24)·丙辰(26); 『宣祖實錄』 卷16, 宣祖 15年 1月 庚申(1); 『春官志』 卷1, 復位「貞陵復位」; 『燃藜室記述』 卷1, 太祖朝故事本末「貞陵廢復」(柳川筭記).

52) 『宣祖實錄』 卷15, 宣祖 14年 12月 壬子(22).

53) 국가와 왕실의 모든 제사의 주체는 국왕이므로 향축을 전하는 경우는 섭행할 때 뿐이다. 때문에 향축을 친히 전한다는 의미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국왕 자신이 친히 가지 못하고, 대신 국왕이 서명한 祝文을 세자나 영의정 등 국왕을 섭행하는 사람에게 위임한다는 뜻이다(『世宗實錄五禮儀』 卷132, 嘉禮儀式「傳香儀」).

54) 『宣祖實錄』 卷15, 宣祖 14年 12月 乙卯(25)·丙辰(26); 『宣祖實錄』 卷16, 宣祖 15年 1月 庚申(1)·庚午(11). 실체는 신덕왕후의 忌辰에 '庶母와 嫂를 위해 한결

향(廟享)에서 빠지고 능침(陵寢)이 황폐해진 것은 그 당시 책임자의 실수이지 태조나 태종의 본의가 아니라고 하였다.

양사와 의정부, 성균관 유생들은 신덕왕후의 일이 천리(天理)의 존망과 인륜의 흥폐와 관계된다고 하여, '의리'를 분명히 할 것을 주장하였다. 지금 시행할 만한 일 가운데 신덕왕후를 추봉(追封)하는 일이 가장 크며, 태묘에 함께 향사(享祀)하여 친추토록 제향하여야 한다고 하였다.<sup>55)</sup> 해를 거듭하도록 줄기 차게 청했지만 허락을 얻어내지 못하였다.

신덕왕후를 복위시키자는 의론을 합계로 청한 지 오래되었지만 선조가 계속 윤허하지 않자 새로운 대안이 나왔다. 직제학 김우옹(金宇顛: 1540~1603)이 선조 15년(1582) 6월에 신덕왕후를 위해 별묘(別廟)를 세워 제사하자는 안이었다.<sup>56)</sup> 그는 『춘추(春秋)』를 인용하여 '제후는 두 적통이 없으니 함께 부모 할 수 없다. 다만 원릉(園陵)에 봉식하고 의절(儀節)은 참작해서 줄이며, 각(閣)을 세우고 관원을 두되 대략 후릉[厚陵은 정종과 정안왕후(定安王后)의 능]의 제도와 같게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sup>57)</sup> 김우옹이 별묘를 세우자는 안을 처음으로 발의했지만 삼시는 그가 이의를 제기했다고 탓하며 인피하였다. 삼사는 정릉의 일을 추론(追論)하고 제릉(齊陵은 신의왕후 능주)과 함께 태묘에 합부할 것을 계청해 왔기 때문이다. 신덕왕후를 적비(嫡妃)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여러 근거를 들며 정비임을 오랜 동안 주장해 온 세력들과의 마찰을 불가피하게 했다.

선조 16년(1583)에 삼사는 신덕왕후가 태조의 정비(正妃)이므로 태묘에 배

---

같이 不肉한다'는 문헌을 근거로, 3품관으로 하여금 代押한 祭文과 疏文을 가지고 齋祭를 행하게 하였으므로 위 내용은 단지 태종을 합리화하려는 것 같다 [『太宗實錄』 卷24, 太宗 12年 8月 乙亥(23); 주 37) 참조].

55) 『宣祖實錄』 卷16, 宣祖 15年 1月 丙寅(7).

56) 『宣祖修正實錄』 卷16, 宣祖 15年 6月 丁亥(1); 『宣祖實錄』 卷16, 宣祖 15年 6月 己亥(13).

57) 『東岡集』 卷9, 啓辭 「避嫌乞遞啓壬午十二月直提學時」; 『宣祖實錄』 卷16, 宣祖 15年 6月 己亥(13).



향해야 한다고 논계(論啓)한 지 두 해를 넘도록 윤험을 받지 못하자, 봉식(封植)만이라도 할 것을 청하기에 이르렀다. 예조에서는 네 왕릉(王陵)의 예대로 치제(致祭)하여 존숭(尊崇)할 것을 청하였지만, 선조는 난색을 보이며 봉식하고 수총(守塚)만을 허락하였다. 삼사가 다시 전례(典禮)대로 시행할 것을 논계했지만 끝내 윤험을 받지 못하였다.<sup>58)</sup>

선조가 쉽게 수락하지 않은 이유는 선왕이 제정해 놓은 일에 이의(異議)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태학생 채증광(蔡增光)의 상소에 잘 명시되어 있다.<sup>59)</sup> 선조(先朝)가 한 일을 후손이 마땅히 고칠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뿐만 아니라 이 일은 너무 오래되었으며 아직까지 한 번도 언급조차 한 사람이 없었다. 이 때문에 선조는 “신하는 당대의 일만 논할 뿐이다.”라고 하면서 더욱 완강하게 반대하였다.<sup>60)</sup> 태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고 오래 전에 일어났으면서도 한 번도 거론조차 된 적이 없었으므로 쉽게 윤험하기 어려웠던 것이다. 선조 초 문소전 논의에서 사류들의 입장이 반영되기 힘들자, 이이가 “백사십년된 위패의 자리도 바꾸지 않으려는 데 백사십년 동안 시행하던 법을 바꾸려고 하겠는가?”라고 하였듯이,<sup>61)</sup> 그보다 더 오래된 신덕왕후의 부묘건은 더더욱 쉽지 않을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런 가운데 선조 16년(1583)에 기대정(奇大鼎: 생몰년 미상)이 새로이 장령(掌令)에 제수되면서 양사(兩司)가 부묘의 청을 굽히고 단지 재각(齋閣)을 세워 제사 올릴 것만 청한 데 대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논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이에 홍문관은 양사를 체임하고 기대정을 출사(出仕)시킬 것을 청하여, 이제까지 함께 재각 건립을 논차(論筭)해 온 자신들의 입장을 굽히고 기대정의 논의를 따르게 되었다.<sup>62)</sup> 당시 기대정의 일은 소요를 불러일으켰고,<sup>63)</sup> 이

58) 『宣祖實錄』卷17, 宣祖 16年 3月 丁未(25).

59) 『燃藜室記述』卷1, 太祖朝故事本末「貞陵廢復」.

60) 『宣祖實錄』卷15, 宣祖 14年 12月 乙巳(15).

61) 金恒洙, 1995 『宣祖初 新進士類와 改革의 推移』 『同大史學』 1, 70-73쪽.

62) 『宣祖實錄』卷17, 宣祖 16年 3月 丁未(25).

63) 『宣祖修正實錄』卷17, 宣祖 16年 4月 壬子(1).

로써 신덕왕후를 부묘하자는 논의는 분열되었다. 양사와 옥당은 신덕왕후 건을 정계(停啓)하였고,<sup>64)</sup> 중국에는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조묘(祧廟)의 예(例)에 의거하여 매년 정릉에 한식제(寒食祭)를 지내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sup>65)</sup>

광해군이 즉위한 후 신덕왕후의 일은 다른 일을 추구하는 데 악용되었다. 광해군 5년(1613) 5월에 인목대비(仁穆大妃)<sup>66)</sup>를 폐하려는 의론을 유발하기 위해 광해군은 방석과 신덕왕후의 고사를 실록에서 고출해내게 하였다.<sup>67)</sup> 광해군 9년(1617) 이후에도 계속해서 서궁(西宮)의 유폐와 관련하여 중국 고사와 함께 거론하였다.<sup>68)</sup> 사실 폐모론과 관련하여서는 정릉보다는 소릉이 더 유사한 사례(事例)였다. 그러나 소릉은 이미 중종대에 복원되어 종묘에서 향사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유일하게 비슷한 사례로 내세울 수 있는 정릉을 전례로 삼았던 것이다.

이후 인조 6년(1628)에 최명길(崔鳴吉:1586~1647)이 각릉을 봉심하고 정릉이 각릉에 비해 중하지 못한 점이 없다고 치계하였다. 최명길은 능에 관한 제반 일이 격식이 낮아 국릉과 같지 않다고 하며, 수호군을 차정하여 별목과 화재를 금하고 정자각은 풍년을 기다려 짓게 하자고 하였다. 예조에서 정자각만큼은 일찍부터 조성하지 않았음에 반드시 뜻이 있을 것이라고 회계하니, 우

64) 『宣祖實錄』 卷17, 宣祖 16年 4月 戊辰(17).

65) 『大東野乘』 卷71, 柳川筭記(韓浚謙 撰); 『燃藜室記述』 卷1, 太祖朝故事本末 「貞陵廢復(柳川筭記); 『春官通考』 卷6, 吉禮, 宗廟 「復位」; 『林下筆記』 卷14, 文獻指掌編 「神德王后祔廟」; 『宣祖實錄』 卷43, 宣祖 26年 10月 戊子(8); 『顯宗實錄』 卷16, 顯宗 10年 2月 丙寅(3); 『顯宗改修實錄』 卷20, 顯宗 10年 2月 丙寅(3).

66) 仁穆王后 金氏(1584~1632)는 선조의 계비로 延興府院君 金悌男의 딸이다. 본관은 延安이다. 永昌大君을 낳았다.

67) 『光海君日記』 卷66, 光海君 5年 5月 癸未(26); 『光海君日記』 卷67, 光海君 5年 6月 庚寅(3) · 癸巳(6).

68) 『光海君日記』 卷121, 光海君 9年 11月 丙寅(5) · 戊辰(7) · 甲申(23) · 丙戌(25) · 丁亥(26); 『光海君日記』 卷129, 光海君 10年 6月 庚午(13).

선 보류하라는 명령이 떨어졌다.<sup>69)</sup> 그 뜻이란 앞서 보았듯이 태종이 정릉의 정자각을 헐게 한 주동자이기에 직접적인 표현을 회피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 살핀 바와 같이 선조대에 신덕왕후를 추후로 종묘에 부모하자는 논의가 제기되어 3년 정도 끝다가 결국 이루지 못하였다. 광해군대에 인목대비 폐비 사건에 악용되기도 하다가 인조대에 이르러 수호군을 두고 정자각만이라도 건립하고자 하였으나 이조차도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무엇보다 태종과 관련되었기에 쉽게 신하들의 의견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선조대에 처음으로 신덕왕후를 복위하고 종묘에 부모하자는 논의가 제기된 점에 있어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 3. 현종대 신덕왕후 부모론의 정치쟁점화와 의미

#### 3.1. 신덕왕후 부모론의 정치쟁점화

현종대를 일러 흔히들 ‘예학 시대’라고 일컫는다. 우선 두 차례의 예송(禮訟) 논쟁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기존 연구들이 이 문제를 중심으로 초점이 두어져 왔음에 반론의 여지가 없다. 사실 현종대는 예송 논쟁만이 아니라 효종의 장지(葬地)를 둘러싼 논쟁, 계후자(繼後者) 규정 논의, 영녕전을 둘러싼 건물의 증수(增修) 논의, 계성묘(啓聖廟)의 건립과 문묘 종사 논의 등 여러 문제가 제기되면서 다양한 양상을 보였다. 이는 현종대의 정국이 복제 논의만이 아니라 여타의 문제들도 복잡하게 얽혀 있었음을 의미하였다. 태조의 계비였던 신덕왕후 강씨를 추후로 종묘에 부모하자는 논의 역시 한 몫을 차지했다.

현종 즉위년인 기해년(1659)에 복제 논쟁으로 하향(下鄉)했던 송시열(宋時烈:1607~1689)이 거의 10년만에 다시 정계로 복귀했다. 그는 비록 시골에 있었지만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자문을 요청받았고, 특히 예 문제에 있어서는

69) 『仁祖實錄』卷19, 仁祖 6年 10月 丁未(20).

더욱 그러하였다. 그 밖에도 주요 현안 문제가 있을 때에는 상소를 통해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였다.

현종 9년(1668) 송시열이 정계로 복귀하기 바로 전 현종은 그를 우의정으로 임명한 상태였다.<sup>70)</sup> 그가 경연에 참석하면서 현종에게 가장 강조한 것은 천하에 대의를 밝히고자 한 선왕을 계지술사(繼志述事)하라는 것이었다.<sup>71)</sup> 효종 말년 송시열을 재상으로 삼아 국정을 맡기려 했던 효종의 유지(遺旨)를 받들기 위해 송시열을 우의정으로 삼았다는 사론(史論)은<sup>72)</sup> 이와 같은 상황에 부합한다고 본다. 송준길(宋浚吉:1606~1672), 김만중(金萬重:1637~1692) 등은 이러한 의도 아래 송시열에게 국정을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였다.<sup>73)</sup> 그러나 현종은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이로써 송시열은 돌아가 버렸다.<sup>74)</sup> 송시열이 머물기를 바라는 요청이 계속 나오자 현종은 입장을 바꾸게 되고 그는 다시 조정으로 복귀하였다.<sup>75)</sup> 그가 조정에 돌아와 있는 동안 변통하는 일이 많았는데,<sup>76)</sup> 그 가운데 가장 큰 일이 바로 신덕왕후를 태묘에 배향(配享)하고 능묘(陵墓)를 다시 봉축하자는 것이었다. 선조대 이후 송시열이 처음으로 발의한 것이었다.

70) 『顯宗實錄』 卷14, 顯宗 9年 2月 癸巳(24); 『顯宗改修實錄』 卷18, 9年 2月 癸巳(24).

71) 『顯宗實錄』 卷15, 顯宗 9年 10月 乙未(30); 『顯宗改修實錄』 卷19, 顯宗 9年 10月 乙未(30).

72) 『顯宗實錄』 卷14, 顯宗 9年 2月 癸巳(24); 『顯宗改修實錄』 卷18, 顯宗 9年 2月 癸巳(24).

73) 『顯宗實錄』 卷15, 顯宗 9年 11月 己亥(4); 『顯宗改修實錄』 卷19, 顯宗 9年 11月 己亥(4).

74) 『顯宗實錄』 卷15, 顯宗 9年 11月 辛亥(16) · 己未(24) · 癸亥(28); 『顯宗改修實錄』 卷19, 顯宗 9年 11月 辛亥(16) · 己未(24) · 癸亥(28).

75) 『顯宗實錄』 卷15, 顯宗 9年 12月 戊寅(14); 『顯宗改修實錄』 卷20, 顯宗 9年 12月 戊寅(14).

76) 『顯宗實錄』 卷16, 顯宗 10年 1月 丙申(2); 『顯宗改修實錄』 卷20, 顯宗 10年 1月 丙申(2).

현종 7년(1666)에 청나라에서 도망쳐 온 사람을 돌려보내지 않은 일로 청나라에서 조사를 나와 매우 곤혹스러운 일이 발생한 적이 있었다. 현종이 저들에게 무릎을 꿇고, 중국에는 벌금을 무는 치욕을 겪으면서 종결되었지만 이로 인해 반청 감정이 고조된 상황이었다.<sup>77)</sup> 그렇지만 조선은 이미 북벌의 실현가능성이 희박해지면서 대명의리의 실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다.<sup>78)</sup> 양난의 충신 열사들을 추모하거나 그들의 자손들을 녹용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에서 짐작할 수 있다. 성리학적 의리명분을 강조하는 시점에 왕실과 관련하여 정통과 의리에 하자가 있었던 문제들도 당연히 그 대상에 들어갔다. 무엇보다 중요한 종묘와 관련한 사안부터 발의하였는데, 바로 신덕왕후를 태묘에 배향하는 문제부터 출발하였다.

송시열은 종묘에 전알(展謁)하는 예를 논의하는 가운데 품어 온 생각을 진달하였다. 당시 국제 정세에 대한 인식과 송시열의 정치적 입지 등을 감안할 때 입안에만 그치지 않고 본격적으로 정치쟁점화 할 가능성은 충분했다. 송시열은 후일 세상을 떠나던 날 문인(門人) 권상하(權尙夏:1641~1721)에게 자신이 조정에서 한 일 가운데 제일 잘 한 일로 꼽은 세가지 가운데 하나가 정릉 추복(追復)이었다.<sup>79)</sup> 이로써 이 문제에 대한 그의 애착을 짐작할 수 있다.

송시열은 신덕왕후가 태조대 왕후가 된 때부터 장례지낸 일, 제1차 왕자의 난, 정종과 태종, 세종을 지나면서 태묘에 배식(配食)되지 못하고 폐롱된 과정을 언급하고, 선조대 처음으로 태묘에 배향하자는 의논과 별묘를 짓자는 의논이 나왔다는 등 전반적인 연혁을 설명하였다.<sup>80)</sup> 이러한 그의 입론을 뒷받침하기 위해 조광조(趙光祖:1482~1519)의 개혁 정책을 일일이 열거하면서 점차 다

77) 『燃藜室記述』 卷31, 顯宗朝故事本末 「罰金之辱臺臣八竄」; 李賢珍, 2004 「조선 후기 永寧殿의 운영과 增修論」 『韓國文化』 33, 201-202쪽 참조.

78) 정옥자, 1998 앞의 책, 16-18쪽.

79) 『肅宗實錄』 卷14, 肅宗 9年 6月 癸未(12). 나머지 둘은 효종을 世室로 정한 것과 태조의 徽號를 추상한 일이다.

80) 『顯宗實錄』 卷16, 顯宗 10年 1月 戊戌(4); 『顯宗改修實錄』 卷20, 顯宗 10年 1月 戊戌(4).

른 인물들로 확장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논리를 폈다.<sup>81)</sup> 우선 중종의 원비(元妃)였던 신씨를 폐비시킨 부당성을 주장한 김정(金淨:1486~1520)과 박상(朴祥:1474~1530)의 일을 정론이라고 하였다. 이어 김자점(金自點:1588~1651)이 빚어낸 강빈(姜嬪) 옥사, 정릉의 일, 소릉 복위, 노산군의 일 등 의리와 정통의 측면에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한 사건들을 모두 차례차례로 연계시켜 언급하였다. 이때 왕실과 관련한 사람들 이외에 을사사화 피화인들도 거론하여, 조선전기 성리학적 의리명분에 어긋나는 사람들의 신원까지 포함시켰다. 이를 아뢰는 과정에 송준길이 함께 참여해 그를 지지하였다.

송시열의 이와 같은 주장에 현종은 정자각(丁字閣)을 세우고 사초(莎草)를 갈아입히는 일 등 정릉을 개봉(改封)하는 일은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이라고 동의하였다. 다만 핵심안인 태묘에 배향하는 문제만은 곤란하게 여겼다. 허적(許積:1610~1680) 또한 종묘에 배향하는 일을 제외한 일들은 현종의 뜻에 적극 동조하였다.<sup>82)</sup> 때문에 정릉의 개봉은 곧바로 논의에 들어가 정자각·안향청(安香廳)·전사청(典祀廳)·집사청(執事廳)·재실(齋室) 등의 중건과 능관(陵官)의 차출, 수호군(守護軍)의 충정을 조릉(祔陵)의 능들과 같게 하도록 결정하였으며,<sup>83)</sup> 이를 위해 정릉 중건청을 설치하였다.<sup>84)</sup>

송시열이 처음 신덕왕후의 능을 보수하고 태묘에 배향하는 예를 청한 이후, 정릉의 수축과 정자각의 건립 등에 있어서는 현종과 다른 대신들도 꽤히 수락하여 별다른 논의를 수반하지 않고 일을 진행하였다. 다만 종묘에 부묘하자는 한 건만은 좀처럼 윤허를 받아내지 못했다. 이 때문에 또다시 그는 차자를 올

81) 『顯宗實錄』 卷16, 顯宗 10年 1月 己亥(5); 『顯宗改修實錄』 卷20, 顯宗 10年 1月 己亥(5).

82) 『顯宗實錄』 卷16, 顯宗 10年 1月 庚子(6); 『顯宗改修實錄』 卷20, 顯宗 10年 1月 庚子(6).

83) 『林下筆記』 卷14, 文獻指掌編「神德王后祔廟」; 『顯宗實錄』 卷16, 顯宗 10年 1月 乙巳(11)·戊申(14); 『顯宗改修實錄』 卷20, 顯宗 10年 1月 戊申(14).

84) 『顯宗實錄』 卷16, 10年 1月 乙卯(21); 『顯宗改修實錄』 卷20, 顯宗 10年 1月 乙卯(21). 尹鑠과 李俊耆를 정릉 중건청 당상으로 삼았다.

려 자신의 입장을 관철시키려 하였다.<sup>85)</sup> 일단 실록을 상고하라는 명이 내려졌고,<sup>86)</sup> 부묘 논의는 확대되어 갔다. 송준길만이 아니라 부제학 이민적(李敏迪 : 1625~1673) 등 옥당의 차자,<sup>87)</sup> 시독관 이민서(李敏叙 : 1633~1688),<sup>88)</sup> 검토포 김만중<sup>89)</sup> 등이 가세하기 시작하였다. 송시열과 이들이 내세운 주요 주장은 신덕왕후가 신의왕후와 다를 바 없이 정비(正妃)임이 명확하므로 부묘하더라도 하등 문제될 게 없다는 것이었다. 이상의 사람들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신덕왕후 부묘의 당위성을 위해 제시한 근거는 같았는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sup>90)</sup>

- 
- 85) 『顯宗實錄』卷16, 顯宗 10年 1月 辛酉(27); 『顯宗改修實錄』卷20, 顯宗 10年 1月 辛酉(27).
- 86) 『顯宗實錄』卷16, 顯宗 10年 2月 乙丑(2)·丙寅(3); 『顯宗改修實錄』卷20, 顯宗 10年 2月 丙寅(3).
- 87) 宗廟儀軌』下, 追祔, 104-107쪽; 『[神德王后]祔廟都監都廳儀軌』(奎 13496~13498); 『[神德王后]祔廟都監都廳儀軌』(佛 CORÉEN 2576); 『顯宗實錄』卷16, 顯宗 10年 2月 戊辰(5); 『顯宗改修實錄』卷20, 顯宗 10年 2月 戊辰(5).
- 88) 『顯宗實錄』卷16, 顯宗 10年 2月 辛未(8); 『顯宗改修實錄』卷20, 顯宗 10年 2月 辛未(8).
- 89) 『西浦集』卷8, 筭「玉堂請神德王后祔廟筭」; 『顯宗實錄』卷16, 顯宗 10年 2月 辛未(8); 『顯宗改修實錄』卷20, 顯宗 10年 2月 辛未(8).
- 90) 『[神德王后]祔廟都監都廳儀軌』(奎 13496~13498); 『[神德王后]祔廟都監都廳儀軌』(佛 CORÉEN 2576); 『列聖誌狀通紀』(一) 卷2, 順元顯敬神德王后康氏「告訃後太祖皇帝慰勅」(太祖六年丁丑三月初八日辛酉), 203-204쪽; 『陽村集』卷12, 記類「貞陵願堂曹溪宗本社興天寺造成記」; 『壺谷集』卷14, 疏「代四學儒生請神德王后祔廟疏」; 『復齋集』下, 有明朝鮮國桓王定陵碑銘; 『雪峯遺稿』卷26, 啓辭「神德王后祔廟啓辭」; 『春官志』卷1, 復位「貞陵復位」; 『燃藜室記述』卷1, 太祖朝故事本末「貞陵廢復」; 『太祖實錄』卷4, 太祖 2年 9月 庚申(18); 『太祖實錄』卷11, 太祖 6年 3月 己巳(16); 『太宗實錄』卷17, 太宗 9年 閏4月 乙卯(13); 『世宗實錄』卷9, 世宗 2年 8月 甲辰(8); 『世宗實錄五禮儀』卷132, 嘉禮儀式「傳香儀」; 『顯宗實錄』卷16, 顯宗 10年 1月 辛酉(27); 『顯宗改修實錄』卷20, 顯宗 10年 1月 辛酉(27); 『顯宗實錄』卷16, 顯宗 10年 2月 乙丑(2)·戊辰(5)·壬午(19); 『顯宗改

첫째, 권근(權近:1352~1409)이 지은 정릉(貞陵) 흥천사(貞陵興天寺) 기문(記文)에 태조가 애도하여 시호(諡號)를 추증한 뜻과 명나라의 태조가 칙서를 내려 조위(弔慰)한 사실. 둘째, 전부터 축문(祝文)에 ‘효증손(孝曾孫) 사왕(嗣王) 신(臣)은 감히 조모(祖母) 신덕왕후(神德王后)께 밝게 고합니다. 운운(云云)’라 하여, 위호(位號)도 제거하지 않았고 강쇄함도 없음이 분명하다는 좌의정 허적의 말. 셋째, 개국 성후(聖后)로서 천자의 고명(誥命)을 받아 일국의 국모가 되어 중궁의 자리에 있는 지 5년이나 된 점. 넷째, 정충(鄭攄:1358~1397)이 찬한 정릉비문(定陵碑文)과 권근이 지은 건원릉 비문에 수비한씨(首妃韓氏), 차비강씨(次妃康氏)라고 한 기록. 다섯째, 세종대 만들어진 『용비어천가』에 신의왕후와 나란히 병기하여 위호가 그대로 존재한 점. 여섯째, 흥서한 뒤 존호와 시호를 올리는 일을 예관에서 폐지하지 않았고 제사를 모시던 의식과 축판이 아직도 향실에 존재한다는 사실. 일곱째, 부음을 듣고 중국에서 칙서·제문·부의를 내린 일. 여덟째, 태종이 친히 향축을 전하여 위호와 축식의 존용함이 지금까지 바뀌지 않았으며, 원릉 석물의 설비 역시 지극히 높여 받들었다는 점 등이었다. 그 밖에 방석의 난 때문에 신덕왕후를 펴손할 수 없다는 이민적의 견해까지 나왔다.<sup>91)</sup>

한편, 세도(世道)를 위임하려 한다는 현종의 말로 인해 다시 정계로 돌아온 송시열은 여러 일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현종은 그가 제안한 여러 일을 흔쾌히 수락하지 않았다.<sup>92)</sup> 신덕왕후를 부묘하자는 안건 또한 여기에 해당하였다. 이러한 일들이 계속되자 송시열은 다시 돌아갈 뜻을 보였다.<sup>93)</sup> 다른 신하들이

『修實錄』卷20, 顯宗 10年 2月 戊辰(5)·壬午(19); 『顯宗實錄』卷16, 顯宗 10年 5月 辛亥(19); 『顯宗改修實錄』卷21, 顯宗 10年 5月 辛亥(19)·壬子(20); 『顯宗實錄』卷17, 顯宗 10年 7月 壬辰(1)·甲辰(13); 『顯宗改修實錄』卷21, 顯宗 10年 7月 壬辰(1)·甲辰(13)·己酉(18) 등을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92) 동성훈 금지라든가 양난의 충신 열사의 추증, 자손 녹용 등의 일들은 즉시 윤허를 받았다. 그러나 궁가의 전토 점유라든가, 공주들의 저택을 경복궁에 지어준 점, 안흥과 태흥 등지에 창고를 설치하는 문제, 신덕왕후 부모, 공물 주인에 대한 처리 등 큰 안건들에 대해서는 윤허를 받지 못했다.



그의 만류를 청하면서 그에게 세도를 위임해야 한다고 아뢴 점에서 현종이 국정을 위임하려는 의도가 애초부터 없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sup>94)</sup>

신덕왕후를 추부(追祔)하자고 강력히 주장해 왔던 송시열이 현종 10년(1669) 2월에 하향하고,<sup>95)</sup> 그를 지지했던 송준길조차 얼마 뒤 떠나자,<sup>96)</sup> 이제 본격적으로 삼사(三司)를 비롯한 언관들이 가세하면서 이를 주장하는 계층이 확대되었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위에서 제시한 추부(追祔)의 여러 가지 근거만이 아니라 중국에서 추후(追後)로 복위한 여러 고사와 조선전기 중종대 소릉을 복위한 예를 들었다.<sup>97)</sup> 이들 사례는 의리의 정당함을 내세워 복위라는 결실을 맺을 수 있었기 때문에 전례(前例)로 삼기를 주청하였다. 부모를 해야 하는 의리가 분명하고 타당하며 모두가 동의하는 공론이라는 이유로 주저하

93) 『顯宗實錄』卷16, 顯宗 10年 2月 己巳(6); 『顯宗改修實錄』卷20, 顯宗 10年 2月 己巳(6).

94) 『顯宗實錄』卷16, 顯宗 10年 2月 乙亥(12)·丁丑(14); 『顯宗改修實錄』卷20, 顯宗 10年 2月 乙亥(12)·丁丑(14).

95) 『顯宗實錄』卷16, 顯宗 10年 2月 丁丑(14); 『顯宗改修實錄』卷20, 顯宗 10年 2月 丁丑(14).

96) 『顯宗實錄』卷16, 顯宗 10年 5月 辛亥(19); 『顯宗改修實錄』卷21, 顯宗 10年 5月 辛亥(19).

97) 중국은 西晉 悼后의 復位, 송나라 元祐皇后의 復號와 錢氏陵墓의 修墓立祠, 太祖 孝章皇后의 陞祔, 명나라 景泰皇帝의 復號 및 憲宗 錢皇后의 耐廟 사례, 조선은 모두 중종대 소릉 복위를 전례로 들고 있다[『息庵遺稿』卷11, 疏筭「玉堂請神德王后耐廟第七筭」(己酉七月副校理時); 『瑞石集』卷8, 疏筭「玉堂請神德王后耐廟筭」(移拜吏議未及上); 『壺谷集』卷14, 疏「代四學儒生請神德王后耐廟疏」; 『竹西集』(奎 5801)卷3, 疏筭「館學請行神德王后耐廟疏」(代儒生作 己酉); 『汾厓遺稿』卷8, 疏筭「請神德王后耐廟筭」(正言時與同僚聯名, 己酉); 『顯宗實錄』卷16, 顯宗 10年 1月 己亥(5); 『顯宗改修實錄』卷20, 顯宗 10年 1月 己亥(5); 『顯宗實錄』卷16, 顯宗 10年 2月 戊辰(5)·壬午(19); 『顯宗改修實錄』卷20, 顯宗 10年 2月 戊辰(5)·壬午(19); 『顯宗實錄』卷16, 顯宗 10年 5月 辛亥(19)(2건); 『顯宗改修實錄』卷21, 顯宗 10年 5月 辛亥(19)(2건)·壬子(20); 『顯宗實錄』卷17, 顯宗 10年 10月 辛酉(1); 『顯宗改修實錄』卷21, 顯宗 10年 10月 辛酉(1).

지 말고 부모하기를 간청하였던 것이다.

물론 위의 여러 근거의 바탕에는 기본적으로 계지술사(繼志述事)가 깔려 있었다. ‘효’의 중요성을 부각시켜 태모 배향 논의의 주요 명분으로 활용하였기 때문이다. ‘계술’에는 두가지 뜻이 있는데, 조부(祖父)의 뜻이나 일을 마땅히 가지고 지켜야 할 만한 것을 지키는 것과 마땅히 변통해야 할 만한 것을 변통하는 것 모두가 계술에 해당하였다.<sup>98)</sup> 송시열이 처음에는 선왕인 효종의 뜻을 잘 이어야 효도를 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라 하여, 효종대의 정국을 회복하려는 의미에서 이 용어를 사용하였다. 그러한 의미의 ‘계술’이 신덕왕후 추부 논의에 이르러서는 원래의 뜻인 선대를 잇는다는 의미보다 변통의 측면을 강조하는 함의로 전환하였다. 임금이 계술하는 도리는 의리의 합당함을 얻는 것에 있고 옛일을 고수하는 것에만 있지 않다는 뜻이었다.<sup>99)</sup> 태종이 신덕왕후에게 가한 일들을 그대로 준수할 것이 아니라 변통하는 도리를 적용해 신덕왕후를 부모함으로써 오히려 태종의 뜻을 잘 계술한다는 의미로 파악하였다.<sup>100)</sup> 이후 의미가 전환된 ‘계술’은 다른 신하들이 신덕왕후를 부모하자고 아뢰는 때에도 항상 원용되었다.<sup>101)</sup> 그들의 주장 역시 송시열이 언급한 차차에서 크게

98) 위 계술의 의미는 공자가 한 말에 선유들이 주를 단 내용을 李珣가 『聖學輯要』에 인용한 부분을 참조하였다. 특히 西山 眞德秀가 바로 위의 뜻으로 정의했다(『聖學輯要』卷13, 聖賢道統5).

夫孝者 善繼人之志 善述人之事者也.

註: 新安陳氏曰 祖父有欲爲之志而未爲 子孫善繼其志而成就之 祖父有已爲之事而可法 子孫善因其事而遵述之 ○西山眞氏曰 當持守而持守 固繼述也 當變通而變通 亦繼述也.

100) 『顯宗實錄』卷16, 顯宗 10年 1月 辛酉(27); 『顯宗改修實錄』卷20, 顯宗 10年 1月 辛酉(27).

101) 『長湖封事』(乾), 封事上 「請神德王后祔廟啓」(己酉五月十九日, 正言時); 『壺谷集』卷14, 疏 「代四學儒生請神德王后祔廟疏」; 『顯宗實錄』卷16, 顯宗 10年 2月 壬午(19); 『顯宗改修實錄』卷20, 顯宗 10年 2月 壬午(19); 『顯宗實錄』卷16, 顯宗 10年 5月 辛亥(19)(2건) · 甲寅(22); 『顯宗改修實錄』卷21, 顯宗 10年 5月 辛亥(19)(2건) · 甲寅(22).

벗어나지 않았다.

현종이 부모를 꺼렸던 이유를 당시 부모를 주장했던 신하들이 생각하기에는 오래전 일이므로 가벼이 고치기 어렵다는 것과 조종들과 관련되는 일이라 추급하여 의논할 수 없다는 점이였다.<sup>102)</sup> 하지만 그들은 이러한 이유들이 부모를 할 수 없는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현종을 설득시켜 나갔다. 능침을 봉축하고 정자각을 증건한 일도 전대에 거행하지 않았다는 점, 『실록』을 상고해 보더라도 당시 부모하지 않았던 것이 조종들의 본의가 아니고 당시 예를 의논한 자들의 잘못으로 돌렸다. 특히 현종이 망설였던 가장 큰 이유로 후자가 결정적이였다. 태종의 덕과 효성이 탁월하지만 유독 신덕왕후에 대해서만 능침의 의절에 손상이 있고 배우(配侑)하는 예가 오래도록 결손되었다는 송시열의 언급은<sup>103)</sup> 태종과의 연관성을 직접적으로 보여주었다. 이로써 부모를 주장했던 신하들은 태종의 본뜻이 아니며 결단코 태종이 정릉을 폄박(貶薄)하지 않았으며,<sup>104)</sup> 특히 태종이 제사를 공경히 받들고 향축을 친히 전했다는 말을 강조하였다.<sup>105)</sup> 사실 태종과의 무관함을 강조할수록 오히려 태종이

102) 『宗廟儀軌』下, 追祔, 108-109쪽; 『老峯集』卷5, 啓辭「百官庭請神德王后耐廟啓辭」(己酉); 『顯宗實錄』卷17, 顯宗 10年 8月 乙丑(5); 『顯宗改修實錄』卷21, 顯宗 10年 8月 乙丑(5).

103) 『宋子大全』卷13, 疏筭「請神德王后耐廟筭」(己酉正月二十六日); 『列聖誌狀通紀』(一)卷2, 順元顯敬神德王后康氏「追耐事實」(顯宗十年己酉正月二十六日庚申), 207-228쪽; 『顯宗實錄』卷16, 顯宗 10年 1月 辛酉(27); 『顯宗改修實錄』卷20, 顯宗 10年 1月 辛酉(27).

104) 『松谷集』卷6, 啓辭「賓廳請神德王后耐廟啓辭」; 『顯宗實錄』卷16, 顯宗 10年 5月 甲寅(22); 『顯宗改修實錄』卷21, 顯宗 10年 5月 壬子(20)·甲寅(22).

105) 『[神德王后]耐廟都監都廳儀軌』(奎 13496~13498); 『[神德王后]耐廟都監都廳儀軌』(佛 CORÉEN 2576); 『長湖封事』(乾), 封事上「請神德王后耐廟啓」(己酉五月十九日, 正言時); 『沔厓遺稿』卷8, 疏筭「請神德王后耐廟筭」(正言時與同僚聯名, 己酉); 『顯宗實錄』卷17, 顯宗 10年 7月 壬辰(1); 『顯宗改修實錄』卷21, 顯宗 10年 7月 壬辰(1). 그 밖에도 문집, 의궤, 실록 곳곳에서 친히 향축을 전한 사실을 강조하는 기록이 적지 않다. 李敏迪은 태조는 신덕왕후를 妻道로써 대

신덕왕후를 종묘에 배식하지 못하게 한 장본인임을 반증하는 결과를 낳을 우려가 컸었다. 그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모두들 그 당시 예를 의논한 신하들의 잘못으로 귀결시키면서 현종을 설득하였다.

여기에 한 가지 더 부모 주창자들의 주장을 덧붙이자면, 개국 초기에는 종묘에 한 임금에게 한 왕비만을 배위로 한다는 말 때문에 신덕왕후가 부모에서 제외된 듯하다고 하였다. 환조 이상의 배위가 각각 한 명이었으므로 당시 예가 그러했던 것 같다고 이해하였다.<sup>106)</sup> 실제로 한 명만을 부모한 관례는 고려시대 부모의 유제(遺制)였다. 고려는 여러 명의 정식 왕후가 있었지만 모두를 부모하지 않고 한 명의 왕후만을 종묘에 배향하고 나머지 왕후들은 후비별묘(后妃別廟)에 모셨다.<sup>107)</sup> 논자들은 이와 같은 고려의 유제가 영향을 미쳐 부모

---

우하였고, 태종은 친히 香祝을 전하여 母道로써 神德을 섬겼다고 하여 특히 강조하였다[『竹西集』(奎 5801) 卷3, 疏筭「館學請行神德王后祔廟疏」(代儒生作 己酉)].

- 106) 『顯宗實錄』 卷17, 顯宗 10年 7月 甲辰(13); 『顯宗改修實錄』 卷21, 顯宗 10年 7月 甲辰(13). 이는 이미 선조대 태학생 蔡增光이 올린 소와 김우옹이 別廟를 주장하는 소에 보인다. 채증광은 신덕왕후를 승부하지 못한 이유를 두 가지 들었다. 그 중의 하나가 바로 개국초기에 前代의 제도, 곧 한 명의 왕후만을 陞祔하는 고려의 제도를 감히 고치지 못하여 신의왕후만을 승부한 것으로 추측하였다. 桓祖가 세 번 王가들었지만 懿惠后만을 홀로 향사한 사실을 예로 들었다(『燃藜室記述』 卷1, 太祖朝故事本末「貞陵廢復」). 김우옹은 春秋之法에 제후는 2번 王가들지 않고, 예에 二嫡이 없다고 하여, 元妃가 죽으면 繼室이 內主가 되지만 元妃만 入廟한다고 하였다. 중국과 고려 역시 춘추의 규정을 준수해 왔다고 하였다. 우리나라는 桓王이 전후로 3번 王가 들었지만 懿妃만 追封한 예를 들었다[『東岡集』 卷3, 疏「論神德王后追祔疏」(壬午四月直提學時)·[自劾疏](壬午五月); 『春秋公羊傳注疏』 莊公 卷8(十三經注疏 整理本, 2000, 北京大學出版社)].
- 107) 이상 고려의 부모 제도와 后妃別廟에 대해서는 이현진, 2003 『朝鮮前期 永寧殿의 營建과 특징』 『韓國學報』 112, 196-197쪽; 『栢潭集』 卷7, 議「貞陵獻議」 참조. 高麗 后妃들의 祔祭 문제와 관련해서는 尹斗守, 1989 앞의 논문, II 장 참조.

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말하면서도 지금 원릉의 여러 의식을 차례로 거행하였으므로 부모를 해야 한다고 하였다. 덧붙여 이들은 이미 종묘에 정비 모두를 부모해 왔었고, 지금의 시점에서 볼 경우 신덕왕후가 정식 비(妃)였음이 명확해졌으니 부모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내세웠다.<sup>108)</sup>

사실 일반 사대부의 경우 처가 둘 이상일 경우 함께 합부(合祔)한다는 규정이 『경국대전』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왕실도 당연히 규정 대상에 포함되었을 것이다.<sup>109)</sup> 이 조항은 조선왕조 마지막 법전으로 고종초에 편찬된 『대전회통』에도 고쳐지지 않은 것으로 보아 조선시대 내내 적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sup>110)</sup>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는 태조를 제외하고는 예종 이전까지는 정비가 한 명뿐이어서 부모할 때 왕후의 부모는 당연하여 쟁점 대상으로 부상되지 않았다.

조선에서 공식적으로 종묘에 계비를 포함한 정비 모두를 부모한 때는 예종 대부터였다.<sup>111)</sup> 국가에서 병부(並祔)한 의식이 예묘(睿廟)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기록은 이를 뒷받침해준다.<sup>112)</sup> 예종의 초비(初妃)였던 장순왕후 한씨(章順王后 韓氏:1445~1461)<sup>113)</sup>는 예종을 부모할 때 함께 부모되었고,<sup>114)</sup> 예종의

108) 연력실기술에 ‘조선의 家法은 定式이 있어서 列聖들의 坤御들은 前後 모두가 配位였다’는 기록이 참조된다(『燃藜室記述』卷1, 太祖朝故事本末 「貞陵廢復」(柳川節記) “本朝家法 既有定式 列聖坤御 前後俱配 諸侯無二嫡之說 不當偏執於太祖 而諸臣一時之論 必欲據經援禮 歸於貶抑而乃已 是未可知”)

109) 『經國大典』卷3, 禮典 奉祀條(서울대 규장각 영인본, 1997, 282쪽).  
文武官六品以上 祭三代 七品以下 祭二代 庶人則只祭考妣.  
士大夫二妻以上並祔.

110) 『大典會通』卷3, 禮典 奉祀條

111) 『宗廟儀軌』上, 各室位版題式(附題位版儀註), 177-183쪽; 『春官通考』(奎 12272)卷4, 吉禮 宗廟 「宗廟各室位版題式」·[永寧殿各室位版題式]; 『春官通考』上,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영인본, 1975, 79-82쪽.

112) 『東岡集』卷3, 疏 「論神德王后追祔疏」(壬午四月直提學時).

113) 장순왕후는 資憲大夫三司左僕射文烈公 韓尙質의 증손녀이고, 上黨府院君領議政 韓明濟의 딸이다. 본관은 淸州이다. 어머니는 고려의 문하시중 閔漬의 5대 손인 漢城府尹 閔大生의 딸이다.

계비인 안순왕후 한씨(安順王后 韓氏: ?~1498)<sup>115)</sup> 는 연산군대에 흥서하여 연산군 7년(1501)에 부묘되었다.<sup>116)</sup> 사실 예종이 태조의 경우와 거의 비슷한 상황인데, 장순왕후는 세자였을 때 사망하였고, 예종이 즉위하여 실제 왕후에 오른 이는 안순왕후였다. 그러나 예종을 부묘할 때 장순왕후를 추존한 뒤<sup>117)</sup> 함께 부묘하였으므로 신덕왕후와 같은 일은 초래되지 않았다. 이후로 계비를 포함하여 정비들은 모두 부묘되었기 때문에<sup>118)</sup> 신덕왕후가 종묘에서 누락된 사실을 잘못된 일로 파악하여 선조대나 현종대에 자연스레 부묘를 주장할 수도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신하들은 현종이 부묘를 쉽게 허락하기 어려워하는 심증을 간파하여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할 근거까지 제시하였다. 그렇지만 윤험을 받아낸 결정적인 역할은 그들이 내세운 명분이었다. ‘의리’로 봤을 때의 명확성과 적합성, ‘계술’이라는 효의 측면을 강조한 명분이야말로 대세화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오래 전에 발생한 일로 보고 듣지도 못하였으며, 애초 억박질러 말한 것도 아니며, 사심(私心)이 없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였다는 등 찬성자들의 추부(追祔) 주장이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는 언급은 이를 뒷받침하는 표현들이었다.<sup>119)</sup> 향후 태학생에 이르기까지 여러 계층을 포괄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반대하는 이도 이러한 명분을 근거로 입장을 되돌릴 수 있었다.

114) 『成宗實錄』卷14, 成宗 3年 1月 己酉(12).

115) 안순왕후는 청주부원군 韓伯倫의 딸이다. 韓明澮의 딸이 세자빈에 책봉되어 가례를 행하였으나 병사하였기 때문에 세자빈에 간택되었다. 예종이 즉위하자 왕비에 책봉되었다. 본관은 淸州이다. 소생으로는 齊安大君과 顯肅公主가 있었다.

116) 『燕山君日記』卷40, 燕山君 7年 3月 辛亥(3).

117) 『成宗實錄』卷14, 成宗 3年 1月 戊申(11).

118) 端敬王后 愼氏를 문제 삼는다면 중종을 예외로 볼 수도 있겠다. 그러나 章敬王后 尹氏는 중종을 부묘할 때, 文定王后 尹氏는 명종 20년에 사망한 뒤 부묘하여 계비도 포함시킨 경우로 파악하였다.

119) 『顯宗改修實錄』卷21, 顯宗 10年 5月 壬子(20).

삼사가 합계하였으며 심지어 태학 유생까지 들고 나왔다.<sup>120)</sup> 정치적으로 주된 쟁점으로 떠오르자 끊임없이 연계(連啓)하기 시작하면서<sup>121)</sup> 이제까지 잠잠하던 대신들이 전면에서 나서서 이 문제를 거론하기 시작하였다.<sup>122)</sup> 대신들 가운데 능침의 봉축과 정자각 건립은 강력히 주장하였지만 부모만은 곤란하게 여겼던 허적이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자책하면서 그 입장을 선회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는 이 일이 의리가 매우 분명하고 여러 사람의 논의가 모두 동일하니 공의를 알 수 있다고 하면서 오히려 속히 따를 것을 계청하였다.<sup>123)</sup>

허적은 처음에 정릉이 제대로 모습을 갖추지 못한 것은 나라의 막대한 흠전(欠典)이며,<sup>124)</sup> 축문에도 신덕왕후라 하여 위호도 그대로 있고 강쇄함도 없음이 분명하다고 하였다.<sup>125)</sup> 사실 이 대목만 보더라도 허적 스스로도 신덕왕후가 정식 왕후임에 틀림없음을 증명한 셈이었다. 그러나 능침과 관련한 일들에만 적극 동참하였고, 부모는 꺼려 쉽게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이 때에 이르러 현종이 망설이는 이유가 자신 때문이라 자책하며 그 입장을 선회한 것이었다. 이후로는 계속 이어지는 대신들의 부모 주청에 꾸준히 참여하였다. 심지어 부모하는 날에는 초헌관(初獻官)으로 활약하였다.<sup>126)</sup> 부모한 지 2년이 지난 뒤 송시열이 소를 올려 정릉을 부모할 때 답전에서 크게 배척하려 한 자가 있었

120) 『南岳集』(奎 4084) 卷5, 疏 「代館學儒生請神德王后耐廟疏」; 『顯宗實錄』 卷17, 顯宗 10年 6月 庚寅(29); 『顯宗改修實錄』 卷21, 顯宗 10年 6月 庚寅(29).

121) 『顯宗實錄』 卷17, 顯宗 10年 7月 丁酉(6).

122) 『顯宗實錄』 卷17, 顯宗 10年 7月 甲辰(13) · 乙卯(24) · 丙辰(25); 『顯宗改修實錄』 卷21, 顯宗 10年 7月 甲辰(13) · 乙卯(24) · 丙辰(25). 이후로는 계속 賓廳에 모여 부모를 계청하였다[『汾厓遺稿』 卷9, 啓辭 「請神德王后耐廟兩司合啓」(持平時)].

123) 『顯宗實錄』 卷17, 顯宗 10年 7月 甲辰(13); 『顯宗改修實錄』 卷21, 顯宗 10年 7月 甲辰(13). 이후로 그는 대신들과 함께 부모 계청에 계속 참여하였다.

124) 『顯宗實錄』 卷16, 顯宗 10年 1月 戊申(14); 『顯宗改修實錄』 卷20, 顯宗 10年 1月 戊申(14).

125) 『顯宗實錄』 卷16, 顯宗 10年 2月 乙丑(2).

126) 『顯宗改修實錄』 卷22, 顯宗 11年 閏2月 庚子(13).

다고 하자, 허적은 모두 동의하여 이론(異論)이 없었는데 그런 일은 들어보지 못한 일이라고까지 말할 정도였다.<sup>127)</sup>

문제는 이 때 허적이 대세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주장을 바꾸었다는 점이다. 현종 15년(1674) 갑인예송(甲寅禮訟) 이후 남인이 정권을 잡자 허적은 곧바로 입장을 번복하였다. 그는 신덕왕후 본궁(本宮)<sup>128)</sup>의 제사가 예에 어긋나므로 폐지해야 하며 본궁에 추후로 부모하지 말아야 한다고 청하였다.<sup>129)</sup> 이보다 앞서 신덕왕후의 위패(位牌)를 함흥(咸興)과 영흥(永興)의 두 본궁에 봉안할 것을 의논한 적이 있었다.<sup>130)</sup> 허적은 그때에는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다가 뒤늦게서야 이처럼 부정적인 의사를 표명하였다. 이를 두고 당시 사론(史論)을 보면, ‘신덕왕후의 복위(復位)는 송시열의 진청(陳請)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남인(南人)이 뜻을 얻자 신덕왕후를 추폐(追廢)하자는 의논이 있었다. 허적 등이 본궁에 추부(追祔)하지 말 것을 청하였으며, 인하여 제사를 폐지하기를 청한 것은 이 때문이다’는 내용은 이를 증명해 준다. 여기에 당시 예조판서였던 홍우원(洪宇遠:1605~1687)이 적극 지지하였다. 허적은 송시열이 적극 추진한 이 일에 서인들만이 아니라 대신에서부터 태학생에 이르기까

127) 『顯宗實錄』 卷20, 顯宗 12年 11月 丁丑(30); 『顯宗改修實錄』 卷25, 顯宗 12年 11月 丁丑(30).

128) 本宮이란 咸興과 永興의 本宮을 말한다. 함흥의 본궁은 태조가 잠저 때 있었던 옛집이다. 穆祖·翼祖·度祖·桓祖의 4대왕과 孝妃·貞妃·敬妃·懿妃의 4왕후의 위판을 봉안하였다. 뒤에 또 태조의 遺敎를 따라 태조와 신의왕후의 위판을 봉안하였다. 임진왜란으로 불타 버렸는데 광해군 때에 감사 韓浚謙이 중건하였다. 숙종 21년(1695)에 신덕왕후를 태조에 追祔하였다. 영흥의 본궁은 桓祖의 옛 저택이다. 태조와 신의왕후의 위판을 봉안하였는데, 숙종 21년에 함흥 본궁과 아울러 신덕왕후를 추부했다. 이상은 『燃藜室記述』(別集) 卷1, 祀典典故 原廟(咸興永興本宮附 魂殿附); 『增補文獻備考』 卷58, 禮考5 宗廟4 原廟; 『林下筆記』 卷13, 文獻指掌編 「咸興府」·「永興府」; 『肅宗實錄』 卷29, 肅宗 21年 12月 丁未(19)·丙辰(28) 참조.

129) 『肅宗實錄』 卷4, 肅宗 1年 9月 癸卯(18).

130) 『肅宗實錄』 卷3, 肅宗 1年 4月 甲辰(16).



지 대거 참여하여 대세화하자 그 입장을 선회하였다가 남인들이 집권하여 追廢 분위기가 조성되자 본래의 자기 입장으로 되돌아갔던 것이다.

현종 즉위년(1659) 기해예송(己亥禮訟) 이후로 허목(許穆:1595~1682), 윤선도(尹善道:1587~1671), 권시(權誥:1604~1672) 등의 인사들이 오랫동안 유배를 가거나 심한 탄핵을 받아 온 상황과 다시 송시열이 정계에 복귀한 시점(현종 9, 1668)에서 허적의 입지를 짐작하게 한다. 심지어 그는 송시열과 배치되지 않으려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으며,<sup>131)</sup> 동시에 송시열을 탄핵하여 비난받고 있는 서필원(徐必遠:1614~1671)을 두둔하려는 모습도 보이는 등<sup>132)</sup> 당시 서인 주도의 정국 형세에서 그가 취한 타협적 태도를 잘 보여준다고 하겠다.

당시 실록이나 문집, 의궤 등의 자료를 통해 볼 때, 허적을 제외한 그 어떤 사람도 반대하는 모습을 발견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당시 서인들의 주장에 반대할만한 세력인 남인이라든가, 척신 청풍김씨 세력의 입장을 살필 필요가 있다. 사실 현종대 후반에는 남인들보다 오히려 후자가 더 여러 부면에서 송시열 등의 입장과 반대되는 모습들을 보여 이들에 대한 검토는 필수적이라 생각된다.<sup>133)</sup>

131) 『顯宗實錄』 卷16, 顯宗 10年 1月 乙卯(21); 『顯宗實錄』 卷16, 顯宗 10年 2月 丙寅(3).

132) 『顯宗實錄』 卷16, 顯宗 10年 2月 辛未(8); 『顯宗改修實錄』 卷20, 顯宗 10年 2月 辛未(8); 『顯宗實錄』 卷18, 顯宗 11年 1月 庚戌(22); 『顯宗改修實錄』 卷22, 顯宗 11年 1月 庚戌(22). 그 밖에도 허적과 서필원의 두터운 친분관계를 보여주는 기록들이 보인다[『顯宗改修實錄』 卷22, 顯宗 11年 3月 辛未(14); 『顯宗實錄』 卷20, 顯宗 13年 1月 辛未(24); 『顯宗改修實錄』 卷25, 顯宗 13年 1月 辛未(24)].

133) 閔維重이 金堉의 墓에 隧道を 쓴 일을 탄핵하였는데 金佐明은 이를 송시열 등이 한 일로 여겨, 기해 복제 예송 때 송시열 등이 정한 기년복에 반대하여 삼년복을 주장하였다[『顯宗實錄』 卷19, 顯宗 12年 3月 己未(8); 『顯宗改修實錄』 卷23, 顯宗 12年 3月 己未(8); 『肅宗實錄』 卷3, 肅宗 1年 4月 戊戌(10)]. 이후로도 閔愼 집안의 복제 문제나 효종의 능에 表石을 세우는 일로 김우명이 송시열과 부딪히기도 했다[『顯宗實錄』 卷21, 顯宗 14年 9月 乙亥(9); 『顯宗改修實錄』 卷27, 顯宗 14年 9月 乙亥(9)].

주목할 점은 두 세력들의 주된 인물들이 신덕왕후 부모 자체를 두고 별다른 이견을 제시한 기록을 발견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허적을 제외한 남인들은 무엇보다 기해 복제 예송 논의 이후로 열세에 놓여 자신들의 입장 표명이 쉽지 않았던 상황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sup>134)</sup> 숙종 초반의 일이지만 윤휴(尹休:1617~1680)와 같은 이는 오히려 ‘만인일구지공론(萬人一口之公論)’으로 말미암아 신덕왕후의 승부(陞祔)를 이루었다고 하면서 칭찬하였다.<sup>135)</sup> 물론 윤휴의 이와 같은 견해에 대해 허목은 태종의 과실을 드러내는 행위라고 판단하여 반대하였다.<sup>136)</sup> 후자의 대표격 인물인 김좌명(金佐明 1616~1671)이나 김석주(金錫胄:1634~1684)는 오히려 부모를 찬성하는 입장을 보여 주목된다.<sup>137)</sup>

134) 특히 남인은 기해 복제 논의에서 삼년복을 주장했던 尹善道(『孤山遺稿』), 權謬(『炭翁集』), 趙綱(『龍洲遺稿』), 洪宇遠(『南坡集』), 洪汝河(『木齋集』) 등과 李沃(『博泉集』), 郭世樞(『無爲齋集』) 및 비록 무인이지만 柳赫然(『野堂遺稿』) 등의 문집에서는 모두 별다른 언급이 없다. 윤선도는 이 때쯤 유배에서 풀려났지만 쉽게 나설 만큼의 상황은 아니었으며, 조경은 송시열이 이 논의를 처음 발론한 지 1달 뒤(10년 2월 6일)에 사망하여 기록이 더욱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동복 오씨들 가운데 吳挺緯는 李殷相과의 일에 연루되어 부모 논의에 참여할 상황이 아니었으며, 吳始壽(『水村集』)의 문집에도 기록이 발견되지 않는다.

135) 『白湖集』 卷10, 疏「請復魯陵疏」(己未正月二十日); 『白湖集』 卷14, 書 [答許眉叟].

136) 『記言』 卷51(續集), 論事2「答希仲書」(己未).

137) 이들의 문집을 살펴보면, 김좌명은 부모 논의가 결정난 뒤의 일인 신주를 고쳐 쓰는 일에 관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있으며[『歸溪遺稿』 卷上, 疏箭「神德王后神主改題事略陳所懷箭」(己酉)], 김석주는 그의 문집에서 몇차례 부모를 찬성하는 기록만 보인다[『息庵遺稿』 卷11, 疏箭「玉堂請神德王后祔廟第七箭」(己酉七月副校理時)·「第八箭」(七月副修撰金萬均同參)·「第十一箭」(七月)·「第十三箭」]. 물론 이 기록들만 보면, 김석주가 입장을 표명한 시점이 허적이 입장을 선회한 시점과 같은 7월일 점이 문제로 제기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주 122), 123) 참조. 또한 7번째 차자를 올리는 논의에서부터 참여한 사실은 그 이전의 입장을 의혹스럽게 여길 만하다. 그렇지만 그 이전부터 흥문관이 계속 부모를 주청할 때, 그는 흥문관 소속으로 異見으로 인한 인피를 했어야 하는데 별다른

그 외 늦게 입장 표명을 한 대신들의 경우를 살펴보면, 이들은 찬성 논의에 참여한 시점이 허적이 입장을 선회한 때와 같은 때였다. 그렇지만 그 이전에 별다른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정도였고 반대한 흔적은 발견할 수 없다. 오랜동안 서인이 정국을 주도했다는 점과 부묘의 명분면에서 반대 의사 표명이 쉽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에는 사학 유생 200여 명이 상소하고,<sup>138)</sup> 여기에 지역 유생까지 참여하며,<sup>139)</sup> 종실에서조차 모두들 청하였다.<sup>140)</sup> 대신들, 삼사, 태학생, 사학 유생, 종실까지 대거 참여하고, 하루에 두 번씩 아뢰기까지 하는 등 더 이상 대세를 막을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대신들은 공론과 의리를 내세우고 종묘에 관계되는 일이므로 조금도 늦출 수 없다고 하였다.<sup>141)</sup> 종묘에서의 정통성으로 볼 때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을 보인 모습들이었다. 2품 이상 대신들의 계속되는 주청, 여러 계층의 끊임없는 상소가 잇따르자 끝까지 윤희를 거부했던 현종도 결국 승낙하였다.<sup>142)</sup>

---

행보를 드러내지 않았다. 그전까지 사태의 추이를 관망했다손 치더라도 반대한 자취는 찾기 어렵다. 오히려 부묘가 결정된 뒤 신주를 고쳐쓰는 일에 참여한 점 등은 그 반대로 보아야 할 듯하다.

138) 『顯宗實錄』 卷17, 顯宗 10年 7月 乙巳(14); 『顯宗改修實錄』 卷21, 顯宗 10年 7月 乙巳(14).

139) 『顯宗實錄』 卷17, 顯宗 10年 7月 甲寅(23); 『顯宗改修實錄』 卷21, 顯宗 10年 7月 乙卯(24); 『顯宗實錄』 卷17, 顯宗 10年 8月 乙丑(5); 『顯宗改修實錄』 卷21, 顯宗 10年 8月 乙丑(5).

140) 『顯宗實錄』 卷17, 顯宗 10年 8月 壬戌(2); 『顯宗改修實錄』 卷21, 顯宗 10年 8月 壬戌(2).

141) 『顯宗實錄』 卷17, 顯宗 10年 7月 乙卯(24); 『顯宗改修實錄』 卷21, 顯宗 10年 7月 乙卯(24).

142) 『[神德王后]耐廟都監都廳儀軌』(奎 13496~13498); 『[神德王后]耐廟都監都廳儀軌』(佛 CORÉEN 2576); 『顯宗實錄』 卷17, 顯宗 10年 8月 乙丑(5); 『顯宗改修實錄』 卷21, 顯宗 10年 8月 乙丑(5). 부묘는 이루어졌지만 貞陵을 원래의 위치로 되돌리자는 데까지 논의를 진전시키지 못한 것을 정릉 문제 논의의 한계로 지적

현종 10년(1669) 8월에 승낙이 떨어지자마자 부묘도감(附廟都監)이 구성되면서 본격적으로 일을 추진하였다. 다만 신덕왕후의 장례 때에 시행했어야 할 일들이었는데 오랜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다시 의식 절차를 밟아야 했기에 많은 문제가 표면으로 떠올랐다. 정릉의 기신(忌辰)날의 추정이라든가, 신주를 만들고 휘호를 올리는 일, 시호를 정하는 일 등 그 밖에 부묘 절차까지 여러 문제가 포함되었다. 경복궁에서 행해졌어야 할 일들인 점, 임진왜란으로 종묘 안의 제1실에서 8실까지 남아 있는 옥책(玉冊)이 없어 전범(前範)을 찾기도 어려웠고, 이 틈에 옥책 문제도 해결해야 하는지 등 여타의 문제까지 얽히면서 복잡한 논의를 유발시켰다. 변례(變禮)로써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실록을 상고하거나 지방에 있는 송시열, 송준길에게 자문을 구하기도 하는 등 많은 논의를 거치며 해결해갔다.<sup>143)</sup> ‘신덕(神德)’이란 시호만 존재하다가 이때 비로소 ‘순원현경(順元顯敬)’이란 휘호(徽號)를 올렸다.<sup>144)</sup> 현종 10년 10월 1일에 부묘례를 거행하면서 장장 10개월에 걸친 신덕왕후의 추부(追祔) 논의는 종결되었다.<sup>145)</sup>

곧바로 왕후의 부모들을 추봉(追封)하는 의전과 강등되었던 본관의 호를 승급시키는 조치가 취해졌으며,<sup>146)</sup> 어머니의 성향(姓鄉)까지 봉증(封贈)하도록 하였다.<sup>147)</sup> 아버지 강윤성(康允成)에게 영동녕부사 상산부원군(象山府院君)

---

한 연구가 있다(尹斗守, 1989 앞의 논문, 325쪽). 정릉의 移陵 자체를 부정하는 셈이 되고 그럴 경우 移陵을 주장한 태종을 不義에 몰아넣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지적하였다.

143) 『同春堂集』卷7, 疏劄 「辭職兼陳所懷疏」(己酉九月).

144) 『列聖冊文』(奎 9822), 神德王后 「追上徽號玉冊文」; 『列聖誌狀通紀』(一) 卷2, 順元顯敬神德王后康氏 「追上徽號玉冊文」(顯宗十年己酉), 228-230쪽.

145) 附廟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모습은 『[神德王后]附廟都監都廳儀軌』(奎 13496~13498); 『[神德王后]附廟都監都廳儀軌』(佛 CORÉEN 2576) 참조.

146) 『顯宗實錄』卷17, 顯宗 10年 10月 乙丑(5); 『顯宗改修實錄』卷21, 顯宗 10年 10月 乙丑(5).

147) 『顯宗實錄』卷17, 顯宗 10年 10月 辛未(11); 『顯宗改修實錄』卷21, 顯宗 10年 10月 辛未(11).

을,<sup>148)</sup> 어머니에게 진산부부인(晋山府夫人)을 추증하였다.<sup>149)</sup> 방번(芳蕃)과 방석은 숙종대 경신환국[庚申換局(숙종 6, 1680)] 뒤 서인이 집권하면서 무안대군(撫安大君)과 의안대군(宜安大君)으로 추증하였다.<sup>150)</sup>

### 3.2. 신덕왕후의 부모와 그 의의

이리 명분과 정통성에 어긋나 문제가 되었던 신덕왕후 부모론은 선조대 사림 정치를 맞이하면서 처음으로 제기되었고, 현종대 서인들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신덕왕후 부모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후대에 끼친 영향까지 언급하고자 한다.

송시열이 10년만에 정계에 복귀하면서 내건 주요 주장은 천하에 대의를 밝히고자 한 효종의 유지(遺旨)를 받들라는 ‘계술’이었다. 효종 말년 송시열을 재상으로 등용하면서 효종은 복벌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그러던 중 효종이 죽어 그 일은 추진되지 못한 채 끝나고, 현종 초기 기해 복제 예송 이후로 송시열도 하향하였다. 10년 뒤 그가 정계로 복귀한 즈음 효종의 뜻을 실현할 사건이 발생하였다. 사은사 일행이 청나라에 지진이 일어나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으며 몽고가 배반한 사정에 대해 보고하였다.<sup>151)</sup> 이를 두고 신하들은 청나라가 난망할 조짐에 반란까지 겹쳤으니 필시 지탱하지 못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송시열이 현종에게 계술을 아뢴 시점도 이 일이 있는 바로 직후였다. 국내적으로는 현종 7, 8년의 굴욕적인 사건으로 반청 감정이 고조된 시점이기

148) 『顯宗實錄』 卷17, 顯宗 10年 10月 癸酉(13); 『顯宗改修實錄』 卷21, 顯宗 10年 10月 癸酉(13).

149) 『顯宗實錄』 卷18, 顯宗 11年 1月 癸丑(25); 『顯宗改修實錄』 卷22, 顯宗 11年 1月 癸丑(25).

150) 『芝湖集』 卷8, 行狀 「先祖撫安大君行狀」(丁巳二月); 『國朝實錄』 卷43, 肅宗朝3 庚申六年 七月; 『肅宗實錄』 卷9, 肅宗 6年 7月 甲寅(27).

151) 『顯宗實錄』 卷15, 顯宗 9年 10月 戊寅(13); 『顯宗改修實錄』 卷19, 顯宗 9年 10月 戊寅(13).

도 하였다. 송시열은 소를 올려 '계술'의 일을 진달하면서 복수대의의 뜻을 은미하게 드러내었다.<sup>152)</sup> 송시열과는 달리 송준길은 청나라의 사정을 보면서 북벌론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천하가 거사한다면 호응 정도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sup>153)</sup>

한편, 몽고의 반란으로 저들의 싸움에 우리를 끌어들이랴 염려하는 가운데<sup>154)</sup> 동지사의 보고는 북벌의 불가능을 확인시켰다. 청나라는 패망의 조짐이 전혀 없으며, 몽고의 모반은 실상이 없다는 것이었다.<sup>155)</sup> 사실상 중원의 주인이 된 청의 간섭을 초래할까 항상 우려하는 현실 속에서 17세기 중반 이후부터는 국가대의로서 제창된 북벌론은 실현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반면 북벌론과 표리를 이루는 존주론, 대명의리론은 강화되어 갔다.<sup>156)</sup> 위 보고는 이러한 실상을 확인시킨 셈이었다. 이 시점에서 삼학사(三學士)를 추증·정표, 그들의 자손을 녹용하는 모습은 대명의리 강조의 한 실례(實例)로써 간주된다.<sup>157)</sup>

당시 대세의 흐름이 의리와 정통의 강조였는데, 왕실 또한 예외일 수 없었다. 무엇보다 왕실부터 그 원칙을 따라 모범을 보일 필요가 있었다. 추증·자손 녹용 등의 소극적인 자세를 뛰어넘어 왕실도 의리와 정통에 맞추어 재편할 것을 요구했다. 우선 종묘와 관련하여 정통성에 하자가 있었던 인물들을 중심

152) 『顯宗實錄』卷15, 顯宗 9年 11月 癸丑(18); 『顯宗改修實錄』卷19, 顯宗 9年 11月 乙卯(20); 『顯宗實錄』卷15, 顯宗 9年 12月 戊寅(14); 『顯宗改修實錄』卷20, 顯宗 9年 12月 戊寅(14).

153) 『顯宗實錄』卷15, 顯宗 9年 11月 己亥(4)·辛亥(16); 『顯宗改修實錄』卷19, 顯宗 9年 11月 己亥(4)·辛亥(16).

154) 『顯宗實錄』卷15, 顯宗 9年 10月 戊子(23); 『顯宗改修實錄』卷19, 顯宗 9年 10月 戊子(23).

155) 『顯宗實錄』卷16, 顯宗 10年 3月 丁酉(4); 『顯宗改修實錄』卷20, 顯宗 10年 3月 丁酉(4).

156) 주 78) 참조.

157) 『顯宗實錄』卷15, 顯宗 9年 7月 甲子(27); 『顯宗改修實錄』卷19, 顯宗 9年 7月 甲子(27); 『顯宗實錄』卷16, 顯宗 10年 1月 乙卯(21); 『顯宗改修實錄』卷20, 顯宗 10年 1月 乙卯(21).

으로 거론하기 시작하였다. 종묘에서의 정통론의 주장은 이러한 상황 하에서 나올 수 있었고, 가장 오래전에 발생했던 신덕왕후의 부묘부터 대두될 수밖에 없었다.

종묘는 국가 왕실의 사당으로 ‘효’의 상징성을 보여주는 곳이다. 때문에 종묘와 관계된 일은 중요성이 그 무엇보다 크기 때문에 쉽게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다. 문종의 비 현덕왕후 권씨도 세조로 인해 소릉이 폐릉되고 종묘에서 출향되었다. 성종, 연산군, 중종을 거치며 두 차례의 혹독한 사화(士禍)까지 겪으면서 종국에는 복위되고 부묘까지 이루었다. 소릉 복위의 어려움은 이 문제가 종묘와 관련되고, 세조(世祖)의 행적과 관련되었기 때문에 쉽지 않았다. 신덕왕후의 경우 역시 종묘와 관련되었고, 태종(太宗)과의 관련성 때문에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 일이 발생한 지 오래되었고, 선조대에 이 문제를 제기했지만 무산되어 현종대까지 이르렀으므로 오히려 더 어려울 수 있었다. 그러나 양난을 겪으며 의리 명분을 무엇보다 강조하는 국내적 상황에서 신덕왕후를 부묘하자는 논의는 오히려 그 명분에 자연스레 부합할 수 있는 안전이었다. 더구나 ‘존호가 그대로 있고 정릉의 의물(儀物)도 왕후의 법제로 되어 있어 소릉의 개봉(改封)이나 원우(元祐)의 복위처럼 중대하고 어렵지 않다’는 이민적 등 옥당의 상차는 소릉보다 쉽게 이를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sup>158)</sup>

신덕왕후를 종묘에 부묘한 사실을 계기로 이후 종묘에서의 정통론 주장은 계속 이어졌다. 사실 송시열이 신덕왕후를 부묘하자고 건의한 뒤, 곧바로 노산군과 폐비신씨, 소릉 복위 등 정통에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을 거론한 적이 있었다.<sup>159)</sup> 하지만 신덕왕후를 부묘하자는 논의가 심화되면서 이 일들은 일단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그러다 신덕왕후 부묘를 현종이 승낙하자 곧바로 다시 이 사안들을 거론하였다. 노산군의 입후(立後) 문제가 제기되었고,<sup>160)</sup>

158) 『顯宗實錄』 卷16, 顯宗 10年 2月 戊辰(5); 『顯宗改修實錄』 卷20, 顯宗 10年 2月 戊辰(5).

159) 『顯宗實錄』 卷16, 顯宗 10年 1月 己亥(5); 『顯宗改修實錄』 卷20, 顯宗 10年 1月 己亥(5).

2년이 좀 더 지나 중종의 폐비 신씨에 대한 열악한 처우의 개선 문제가 거론되었다.<sup>161)</sup> 두 문제 모두 복위시키자는 정도까지 나아간 것은 아니었지만 신덕왕후의 부모와 관련하여 종묘에서의 정통을 바로 세우자는 취지 및 ‘의리’라는 명분하에 표면으로 떠오른 것이었다. 이들 과제들은 현종대에는 더 이상 진전을 보지 못한 채 속종, 영조대로 미루어졌다. 속종대 공정대왕의 묘호를 추상(追上)하자는 논의,<sup>162)</sup> 노산군을 복위하자는 논의,<sup>163)</sup> 중종의 부인이었던 폐비(廢妃) 신씨를 왕후로 복위하자는 논의로 이어졌다.<sup>164)</sup> 앞의 두 문제는 속종대 모두 논의를 종결지어 복권되었지만 세 번째 사안은 영조대에 이르러서야 해결을 보았다.<sup>165)</sup>

물론 신덕왕후의 부모는 같은 ‘명분’을 가지고 이들 일들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일련의 일들은 논의의 과정에서 항상 ‘선조(先朝)·종묘(宗廟)와 관련된 막대한 일이므로 경솔하게 거론할 수 없다’는 언급이 등장하였다. 주로 종묘 정통론과 관련하여 공통적으로 거론되는 언급들이다. 아울러 이들 일들은 해결을 위한 추진과정에서 항상 앞 사건이 뒷 사건의 전례(前例) 역할을 하였다. 신덕왕후 부모논의 때에는 중국의 고사와 중종대 복위된 소릉만이 거론되었지만, 점차 소릉·정릉이 거론되고, 뒷 사건으로 갈수록 중첩되는 모습을 보였다.

160) 『顯宗實錄』卷17, 顯宗 10年 8月 戊寅(18); 『顯宗改修實錄』卷21, 顯宗 10年 8月 戊寅(18).

161) 『顯宗實錄』卷20, 顯宗 13年 3月 庚戌(4); 『顯宗改修實錄』卷25, 顯宗 13年 3月 庚戌(4); 『顯宗實錄』卷20, 顯宗 13年 7月 丁未(4). 神主는 본가에 돌려주고, 묘소를 수축하고, 묘소를 수호할 人戶를 주며, 祭需는 관청에서 지급하는 선이었다.

162) 『肅宗實錄』卷12, 肅宗 7年 7月 甲戌(23).

163) 『肅宗實錄』卷32, 肅宗 24年 9月 辛丑(30); 『肅宗實錄』卷32, 肅宗 24年 10月 甲子(23)·乙丑(24).

164) 『肅宗實錄』卷32, 肅宗 24年 9月 辛丑(30); 『肅宗實錄』卷32, 肅宗 24年 10月 甲子(23).

165) 『英祖實錄』卷49, 英祖 15年 3月 丁巳(11).



신덕왕후 부모는 조선후기 왕실과 관련하여 의리와 명분에 어긋난 일들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기준이 되었다. 종묘에서의 정통론이 확립되어 가는 전초 역할을 하여 후일 종묘정통론과 관련한 사안들에 영향을 끼친 점에서 그 의미는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

#### 4. 결론

이상으로 조선초기 태조의 계비였던 신덕왕후 강씨가 정비였음에도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다가 조선중·후기를 거치면서 부모되어 가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의리와 명분에 어긋나 문제가 된 사안들 가운데, 왕실과 관련하여 가장 먼저 발생한 사건이 신덕왕후가 태묘에 부모되지 못하고 폐릉까지 간 사건이었다. 제1차 왕자의 난과 그의 친숙이었던 조사의가 일으킨 반란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어 이러한 상황을 초래하였다. 태종과 세종을 거쳐 오랜동안 폐릉이 단행되어 갔다. 아직 건국초기라 제도문물이 정비되지 않았으며, 성리학이 국학으로 채택되었지만 성리학적 의리 명분보다는 사장학이 중시된 측면이 왕실에까지 반영되어 이러한 결과를 낳았던 것이다.

사림이 정계에 등장하면서 훈구 중심의 정치에 제동을 걸며 개혁을 추구하기 시작하였다. 사화를 겪으면서도 이들의 개혁은 이어져 세조에 의해 종묘에서 출향되고 폐릉이 된 소릉을 복위시켰다. 선조대에 이르러 사림 정치를 맞이하면서 신덕왕후를 복위시켜 종묘에 부모하자는 안건 역시 이러한 맥락의 연속이었다. 3년 동안의 끈질긴 요청이 있었지만 허락이 떨어지지 않자, 별모를 세워 제사를 지내자는 이견도 나와 논의가 분열되었다. 중국에는 정릉에 한식제를 지내는 것으로 끝나고 말았다. 선조는 이 일이 태종과 직접적으로 관계되고, 오래 전에 일어났지만 한 번도 거론된 적조차 없어 수락을 완강히 거부했다. 그럼에도 선조대는 처음으로 신덕왕후를 복위하고 종묘에 부모하자는 논의가 제기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양난을 겪은 뒤 조선 사회의 급선무는 국가 기강의 회복이었고, 때문에 의리와 명분을 무엇보다 강조하였다. 이미 17세기 중반 이후부터 국가대외로서 제창된 북벌론은 실현 가능성이 희박해진 반면, 이와 표리를 이루는 대명의리론이 강화되어 갔다. '의리'의 강화는 조선전기까지 소급하여 성리학적 의리명분에 어긋난 일들까지 총정리하기 시작하였다. 동시에 왕실과 관련하여 정통성과 의리에 하자가 있었던 사건들까지 그 대상에 포함시켰다. 종묘에서의 정통론을 확립할 것을 요청한 주장도 이러한 배경하에 나올 수 있었다. 가장 오래전에 발생했던 신덕왕후의 부모 문제부터 거론되기 시작하였다.

기해복제 예송으로 하향한 뒤, 10년만에 정계로 다시 복귀한 송시열이 정릉을 개봉하고 신덕왕후를 종묘에 부모하자고 건의하였다. 오래된 일이었으며, 선조대에도 제대로 실현을 보지 못하였고, 무엇보다 태종이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쉽게 결정을 이끌어내지 못하였다. 송시열 이후 삼사, 대신들, 태학생 등 여러 계층들까지 가세하면서 논의는 본격화되었다. 선조의 잘못을 변통하는 것 역시 '계술'이듯이, 계술이라는 효의 측면을 강조하고, '의리'로 봤을 때 명확하고 적합하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이러한 명분론은 확산되어 망설이는 현종과 반대 의사를 표명한 허적까지 입장을 선화하게 만들었다. 여론이 대세화하자 결국 종묘에 부모하면서 논의가 종결되었다.

신덕왕후를 종묘에 부모한 일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후에 발생한 종묘에서의 정통론 논의에 영향을 미쳤다. 공정대왕의 묘호 추상과 단종(端宗) 복위, 단경왕후 복위 논의 등으로 이어지는 전초 역할을 하였다. 이 문제는 조선 후기 왕실과 관련하여 의리와 명분에 어긋난 일들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기준이 된 점에서 그 의미는 매우 컸다.

신덕왕후의 부모가 송시열이 제창하여 서인들의 주도로 이루어졌음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격심한 정치적 변동을 겪는 숙종대에도 왕실 전례 논의는 모두 이들의 주도로 추진되기 때문이다. 숙종대에 여러 왕실 의례 행사를 추진하기에 앞서 현종대에 신덕왕후의 부모를 추진하면서 같은 취지아래 전초 역할을 하였다고 보기 때문이다. 숙종대 환국을 통해 변동하는 정치 세력의 파악과 그 가운데 논의되는 왕실 의례 논쟁에 대한 검토는 차후에 수행할 과제

로 삼고자 한다.

## 참고문헌

### I. 史料

『高麗史』; 『朝鮮王朝實錄』.

『神德王后祔廟都監都廳儀軌』(奎 13496~13498); 『神德王后祔廟都監都廳儀軌』(佛 CORÉEN 2576); 『宗廟儀軌』(奎 14220, 서울대 규장각 영인본, 1997).

『國朝寶鑑』; 『大東野乘』; 『聖學輯要』; 『燃藜室記述』; 『列聖誌狀通紀』; 『列聖冊文』(奎 9822); 『林下筆記』; 『增補文獻備考』; 『春官志』; 『春官通考』(奎 12272,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영인본, 1975); 『經國大典』; 『大典會通』; 『春秋公羊傳注疏』.

『孤山遺稿』; 『歸溪遺稿』; 『記言』; 『南岳集』(奎 4084); 『南坡集』; 『老峯集』; 『東岡集』; 『同春堂集』; 『木齋集』; 『無爲齋集』; 『博泉集』; 『栢潭集』; 『栢潭集』; 『白湖集』; 『復齋集』; 『汾厓遺稿』; 『西浦集』; 『雪峯遺稿』; 『松谷集』; 『宋子大全』; 『水村集』; 『息庵遺稿』; 『野堂遺稿』; 『陽村集』; 『龍洲遺稿』; 『長湖封事』; 『竹西集』(奎 5801); 『芝湖集』; 『炭翁集』; 『鶴峯集』; 『壺谷集』.

### II. 論著

金恒洙(1995), 「宣祖初 新進士類와 改革의 推移」 『同大史學』 1.

우경섭(2004), 「潛谷 金堉(1580~1658)의 學風과 ‘時勢’ 認識」 『韓國文化』 33.

尹斗守(1989), 「神德王后에 관한 研究」 『石堂論叢』 15.

李賢珍(2002), 「조선전기 昭陵復位論의 추이와 그 의미」 『朝鮮時代史學報』 23.

李賢珍(2003), 「朝鮮前期 永寧殿의 營建과 특징」 『韓國學報』 112.

李賢珍(2004), 「조선후기 永寧殿의 운영과 增修論」 『韓國文化』 33.

鄭萬祚(1992), 「17世紀 中葉 山林勢力(山黨)의 國政運營論」 『擇窩許善道先生

停年紀念韓國史學論叢』.

鄭萬祚(1999), 「17세기 중반 漢黨의 정치활동과 國政運營論」 『韓國文化』 23.

鄭萬祚(1999), 「朝鮮 顯宗朝의 公義·私義 論爭과 王權」 『東洋 三國의 王權과 官僚制』(조선시대사학회) 국학자료원.

禹仁秀(1999), 『朝鮮後期 山林勢力研究』 一潮閣.

정옥자(1998), 『조선후기 조선중화사상연구』 일지사.

원고 접수일: 2005년 6월 20일

게재 결정일: 2005년 11월 29일

**ABSTRACT**

---

Discussions over the issue of Enshrining(祔廟) the Late Queen Shindeok Wanghu/神德王后 in the National Shrine, and the Meanings of those Discussions which continued during the Joseon dynasty period

Lee Hyun-jin

The Joseon dynasty was a country which prioritized values such as just causes and moral obligations above anything else, and that can be seen from the dynasty's accepting of Neo-Confucianism as the central ideology of the country. But during the early days of the dynasty, several issues that had clashed with such position of the government had occurred, and became a controversy. One of the earliest incidents that occurred at the time, and involved the Royal family members, was the incident in which Queen Shindeok Wanghu, the second wife(繼妃) of the Founder King Taejo, was denied the honor of being enshrined in the National shrine with her husband, and instead stripped of her rank and condemned(廢陵). This stripping and condemnation was an ongoing process which continued during the reigns of Kings Taejong and Saejong.

Then later, during the reign of King Seonjo, when Sarim/士林 politics were finally established and entered a stabilized phase, the agenda of reinstating the late Queen Shindeok Wanghu and enshrining her in the National shrine was first suggested after a very long time. Yet the suggestion was rejected and postponed for a review for an indefinite time being, even though the agenda was

supported by many people at the time.

After the dynasty suffered two catastrophic warfares, restoring the ruling structure of the dynasty became the most critical priority of the Joseon dynasty, and in order to support such cause, concepts like just deeds and moral obligations were promoted as the most important and honorable values of all time. At the same time the prospect of successfully launching a campaign against the Northern Qing dynasty was significantly diminishing, and therefore the public support of the idea that the Joseon should remain loyal to the late Chinese Ming dynasty and serve as a guardian of those spirits naturally increased. This kind of atmosphere led to a series of discussions over issues such as establishing and demonstrating the government's position and ideas of the 'Legitimacy' cause through governmental features such as the National Shrine, and the age-old issue regarding the enshrinement of the late Queen Shindeok Wanghu finally resurfaced. The discussion was triggered essentially when Song Shi Yeol/宋時烈 suggested to reopen this case for further discussion in 1669(10th year of King Hyeongjong's reign), and the talks were led by the Seoin/西人 politicians and scholars inside the government. The discussion later came to include other governmental officials and also the students at the Taehak institute, and resulted in the eventual enshrinement of Queen Shindeok Wanghu in the National Shrine.

This was indeed a monumental case, considering how this case affected the discussions of the Legitimacy issues regarding the National Shrine that continued later on.